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15世紀 官營手工業의 變動과 私匠

2017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高 恩 慶

15世紀 官營手工業의 變動과 私匠

指導教授 朴平植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高 恩 慶

高恩慶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7年 1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國文抄錄

본고는 15세기 조선왕조의 官營手工業 政策의 수립과 변동에 대해 검토하고, 私匠의 정의와 성격을 재정리한 글이다. 조선은 건국 후 체제 정비 과정에서 관영수공업 제도를 정비하여 수공업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국가는 전업 기술인을 官匠으로 등록하고 국가의 체계와 기반을 갖추는 여러 사업에 동원하였는데, 이들 官匠은 번을 정하여 교대로 복무하고 복무일 외에는 工匠稅를 부담하며 자유롭게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현실에서 관영수공업 정책은 국가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당대 사회경제적 변동과 맞물려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성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관공장은 私的 營利를 추구하는 활동의 비중을 늘려갔으며, 나아가 관영수공업 제도에서 이탈하여 私匠이 되기도 하였다.

기왕의 연구에서 私匠은 16세기 이후 등장한 독립적 기술인으로서 官匠에 대비되는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 전기 官匠에게 私的 활동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점, 16세기 이전 민간 교환경제에서도 수공업제품의 조달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私匠은 ‘민간에서 활동하던 모든 工匠을 統稱’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에 ‘官匠으로서 私的 營利활동을 하던 자’ 역시 私匠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私匠의 활동 유형은 크게 ‘상인과 연계하여 활동한 자’, ‘자기 자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제작과 판매를 겸한 자’, ‘영세규모로서 농업을 겸한 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는 私匠의 성장에 대응하여 필요 물품을 市廛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 방식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한편으로 武器 제조나 최고급 왕실 물품 생산 등에 있어서는 관영수공업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동은 조선의 集權的 경제 정책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민간 교환경제가 발달하고 官匠·私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던 현실에 조용하여, 국가가 수공업 정책 운용의 범위를 주체적으로 재편성해간 과정이었다.

주요어 : 官營手工業, 官匠, 私匠, 集權的 經濟政策, 官匠의 私的活動
학 번 : 2013-23366

次 例

國文抄錄

1. 序言	1
2. 朝鮮 初 官營手工業의 整備	4
3. 官營手工業의 動搖와 官匠 離脫	19
4. 私匠의 擴散과 그 樣相	35
5. 結語	52
參考文獻	57
Abstract	61

1. 序言

手工業은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다양한 물자를 사람의 손을 거쳐 제작하는 일로서, 우리 역사에서는 수렵 도구를 제작하던 원시사회부터 발달하여왔다. 특히 우리나라 중세 경제에서 수공업은 生必需品과 奢侈品, 內需와 外需를 위한 물자 생산의 전반을 담당하였고, 국왕으로부터 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와 무관하게 생활할 수 없었을 만큼 중요한 산업이었다. 따라서 중세사 연구에서 수공업을 점검하는 일은 우리나라 중세 경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이자 시대상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러나 중세사회에서 수공업이 갖는 이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세 수공업사의 연구 성과는 농업·상업사의 그것보다 다소 미진한 편이다. 수공업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수공업 일반을 정리한 연구저작이 출판된 바 있고,¹⁾ 뒤이어 시대별 수공업사 정리 또한 이루어졌다.²⁾ 이러한 선행 연구 아래 수공업 관련 특정 제도에 대한 심화 연구, 원료 조달 및 물품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 등 그 주제가 다양해졌다.³⁾ 반면 연구의 대상 시기는

-
- 1) 홍희유, 『(개정판)조선수공업사(이조편)』, 사회과학출판사, 2012.
 - 2) 姜萬吉, 「朝鮮前期工匠考」 『史學研究』 12, 1961(『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에 재수록);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1996; 徐聖鎬, 「高麗前期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해옥, 「조선 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1999.
이 중 「朝鮮前期工匠考」(姜萬吉, 1961)는 조선 전기의 관영수공업 제도와 전업 기술자인 장인을 다루고 있는데, 사료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수공업 정책과 업계의 변동 등 수공업 일반을 정리하여 오늘날 조선시대의 수공업을 이해하는 端初를 제공하였다.
 - 3) 유승주, 「朝鮮前期 軍需工業에 관한 一研究-壬亂 중의 武器製造實態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32, 1981; 金信雄, 「朝鮮時代의 手工業 研究-京工匠·外工匠의 分解와 企業的手工業의 擡頭」,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4; 이병희, 「조선 전기도자기 수공업의 편제와 운영」 『역사와 현실』 33, 1999; 한정수, 「조선 전기 제지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1999; 송성안, 「高麗後期 寺院手工業의 工匠과 手工業場」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 최완기, 「조선조 漢陽에서의 匠布制 실시와 그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全暎俊,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鄭治泳, 「高麗~朝鮮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 2006; 최문환, 「조선시대 기와 유통 연구-

비교적 사료가 풍부한 조선 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일제 식민사학의 停滯性論을 수공업사 영역에서도 극복하고자 했던 학계의 동향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오늘날 수공업사 연구는 우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계통적으로 정리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세부 내용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아졌다.

특히 조선시대사 중에서도 후기에 집중된 연구 성과들은 조선 후기 民營手工業의 발달상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그 토대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조선 전기 수공업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전기의 수공업사 연구는 조선왕조가 집권 국가적 특성에 따라 수공업을 직접 관리·운영하였다는 초기의 정리 내용에서 심화되지 못하였고, 민간 교환경제 속 수공업품의 조달 등 실제 수공업정책의 운영과 전개에 관심을 둔 후속 연구 성과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15세기 수공업사 연구 성과의 미비는 오늘날 조선시대 수공업 인식에도 도식적인 이해를 불러왔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수공업 발달의 관점에서 단순히 관영과 민영수공업의 시대로 나누어 보는 문제, 조선 후기 민영수공업의 발달에 對照하여 조선 전기의 수공업 경제를 왜소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려내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리는 조선의 수공업사를 실체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당대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여러 部面과 연계하였을 때에도 체계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수공업사 정리는 조선시대사 전반의 이해 문제에 있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15세기 조선왕조의 수공업제도의 정비 및 변동 양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 집권국가인 조선의 경제정책과 그 운용 방침이 수공업의 영역에서 전개된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

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사학지』 42, 2010 ;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70, 2011 ; 서수민, 「高麗末·朝鮮初期 陶器手工業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홍대한, 「고려시대 공장 운영과 성격 고찰 : 조탑 공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 2012 ; 김순영, 「조선시대의 염료 수급 체계와 염색 수공업자 유형」 『한국의류학회지』 38, 2014 ; 장경희, 「조선시대 철물 제작 장인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7, 2014.

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작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가 국초 관영수공업 정책을 정비한 배경과 구체적인 정비 내용을 점검한다. 이 작업을 통해 조선의 국가 체제 정비 작업이 수공업 영역에서 이루어진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관영수공업의 정비 이후 발생한 동요 현상들과 그 배경을 짚어봄으로써 조선의 수공업체도가 당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다른 경제 영역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공업의 담당자인 匠人의 활동상과 성격을 점검한다. 이 작업에서는 관영수공업의 주체인 官匠과 관부에 예속되지 않은 私匠의 개념을 함께 정리할 것이다. 그동안 私匠은 官匠의 반대개념이자, 16세기 이후 官匠制를 붕괴시키고 민영수공업의 발달을 가져온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온 장인들의 활동상과 조선 전기 官匠制의 운영방식 등을 생각하였을 때, 官匠·私匠의 定意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15세기 수공업사의 제반 면모를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하고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수공업계 변동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러한 수공업정책의 운영이 중세국가인 조선의 집권체제가 갖는 특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朝鮮 初 官營手工業의 整備

조선은 太祖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새로이 정비하고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힘썼다. 鄭道傳을 비롯한 건국 세력에게 고려 말 폐단을 구제하고 신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일은 중요 과제였으며, 조선이 극복해야 했던 前朝 고려의 문제점에는 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된 국가 기반의 해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영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확립되고, 이 과정에서 관영수공업 제도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관영수공업 정비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 토지·농업 문제와 연계하여 발생한 상업·수공업계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번성한 상업도시였고, 布帛·毛革·器皿·冠服·鞋靴 등의 점포들로 나뉘어 大市를 이뤘다.⁴⁾ 개경에는 시전 외에도 민간의 상설 점포가 존재하였고, 일상생활용품을 거래하는 街路市 등도 있었다.⁵⁾ 이렇듯 다양한 상업 시설이 존재하였고 그 판매 물종들이 각계각층의 衣食住 및 문화적 수요와 관련되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수공업이 발달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2세기 이후 所의 해체로 국가에 납품할 물품을 생산하던 소속 장인들이 民營手工業者로 대거 전환하였고, 고려 말 貢物代納制가 시행되면서 민간에서 수공업은 한층 발달하였다.⁶⁾ 나아가 당시 대외무역의 확대는 織物 제조, 金·銀 등의 귀금속 세공, 農具와 같은 철물 제작 등 관련 수공업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공업 기술의 발달, 생산의 양적 증대와는 별개로 그 이익을 취하는 계층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미 토지 겸병을 통해

4)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正月 28日 乙未.

工不居肆 業不能專 故舊京之時 布帛毛革器皿冠服鞋靴鞭勒 分店大市

5) 朴平植, 「고려후기의 개경상업」 『국사관논총』 98, 2002, 216~217쪽.

6) 김동철, 「고려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부대사학』 9, 1985 ; 서성호, 「고려 무신집권기 상공업의 전개」 『국사관논총』 37, 1992 ; 김동철, 「수공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대농장을 소유하고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던 王室, 貴族, 寺院勢力 등의 특권 계층이 상공업에서의 이익 역시 침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특권세력은 경제외적 강제나 불법적인 抑買 등을 통해 對中國 수출 품목들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所의 붕괴로 현물수탈에 시달리던 지방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토지로부터의 유리를 촉진시켰다. 토지에서 분리된 농민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權勢家나 寺院에 투탁하였고,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⁷⁾ 수공업은 농업과 달리 토지라는 생산수단이 없더라도 기술만으로 생산이 가능하기에,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 수공업으로 전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⁸⁾ 또한 유망한 농민들의 賦役 기피⁹⁾는 국가 경제 기반의 붕괴, 나아가 국가 지배체제의 해체로도 이어지는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은 건국 후 농민들을 토지에 긴박시켜 안정적으로 稅收를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조선이 국초 유교적 職業·身分觀으로서 士·農·工·商의 四民觀을 주창하고 務本抑末의 방침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農을 本業으로, 工商을 末業으로 삼아 백성을 본업에 안정시키고 말업으로 쉽게 전향할 수 없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은 수공업과 상업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종사하게 하고 이들을 직접 장악하는 抑末의 방향으로 말업을 정비하였다.¹⁰⁾ 국초 官營手工業 制度의 정비와 市廛體制의 확립은 이 ‘抑末’의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었다.

조선이 관영수공업을 정비하고자 한 데에는 국초 新都 건설 과정에서 王宮·官廳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도전

7) 『朝鮮經國典』 賦典 版籍條.

戶口日就於耗損 其有見存者 不勝賦役之煩 折而入於豪富之家 托於權要之勢 或作工商 或逃浮圖 固已失其十五六

8) 『朝鮮經國典』 賦典 經理條.

富者益富而貧者益貧 至無以自存 去而爲游手 轉而爲末業

9) 『高麗史』 刑法志 戶婚條.

十四年八月 憲司上疏曰……禾尺 才人 不事耕種 相聚山谷 詐稱倭賊 不可不早圖

10) 朴平植, 「朝鮮政府의 商業認識과 抑末策」, 『朝鮮前期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1999, 47~59쪽.

저자는 조선왕조의 抑末策이 말업에 대한 抑壓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統制와 管理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은 『朝鮮經國典』에서 국가에 필요한 각종 役事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宮苑은 조정의 위엄을 높이고 명분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官府는 百僚가 거처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倉庫는 貢賦를 바치고 저장을 잘 해두기 위한 것이다. 城郭은 외적을 막아서 뜻하지 아니한 변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宗廟는 조상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橋梁은 하천과 육지를 연결하여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兵器는 간사한 도적들을 방비하여 왕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鹵簿는 禁衛를 엄하게 하고 儀衛를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¹⁾

즉 宮苑과 官府, 倉庫, 城郭, 宗廟, 橋梁을 짓고 兵器와 鹵簿를 제작하는 각종 工役들은 모두 조정의 위엄과 명분, 국가의 방비를 위한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工匠이 투입되어야 하였다. 또한 각종 역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안정적으로 공장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각종 공장들을 국가에 소속시켜 두고 왕실이나 중앙의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때마다 동원하는 방식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필요물품들을 조달받는 데에도 공장이 동원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기본적으로 貢納制를 통해 民으로부터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수취하였으나, 모든 물품이 수취되지 않기도 하거나와 물품의 質 또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공장에게 국가 수요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공납제를 보완하고 국가 경제를 현물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정도전이 “百工의 기술은 그것이 비록 비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이용 면에서 볼 때에는 매우 긴요하니 그 어느 하나도 내버려서는 안 된다.¹²⁾”라 한 것도 국가가 다양한 기술

11) 『朝鮮經國典』 工典 總序.

曰宮苑 所以尊朝廷 而正名分也 曰官府 所以處百僚 而供其職也 曰倉庫 所以納貢賦 而慎蓋藏也 曰城郭 所以禦外侮 而備不虞也 曰宗廟 所以祀祖宗也 曰橋梁 所以通川陸 而利往來也 曰兵器 所以備姦寇 而衛王室也 曰鹵簿 所以嚴禁衛 而昭文章也

12) 『朝鮮經國典』 工典 金玉石木攻皮塼埴等工條.

百工之技 雖其卑且賤者 其於國家之用 實爲緊要 皆不可廢也

분야의 공장을 확보해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관영수공업 제도의 정비는 고려 말의 逐末 인구를 농업으로 귀환시키고, 국가의 工役 사업과 수요품 제작에 효율적으로 공장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工匠들을 工匠案에 기록하여 이를 本曹, 本官廳, 本道, 本고을에 두고 관리하였다.¹³⁾ 工匠案에 이름이 오른 장인들은 중앙 및 지방 각 관청에 소속된 官匠(官工匠)이 되었으며 조선의 관영수공업 제도 아래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官匠의 신분 구성은 크게 천민과 양인으로 구분되었다. 공장안을 보관할 때 천민 신분의 官匠은 公賤에 해당하므로 刑曹에, 양인 官匠의 것은 工曹와 兵曹에 비치하였다.¹⁴⁾ 천민 신분의 官匠은 다시 官奴와 寺院出身(寺奴, 僧侶 포함), 私奴 등 다양한 처지의 예속인으로 나뉘었고 간혹 選上奴가 관장이 되기도 하였다.¹⁵⁾ 관장 중 官奴인 이들은 고려의 관노 출신으로 수공업 기술을 가진 자들로서, 국초 조선의 관노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등록되었다. 이들은 조선이 수공업 관청을 정비함에 따라 각 관청으로 配屬되고,¹⁶⁾ 각자가 가진 기술이나 신역을 부담하며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寺院 출신의 官匠으로는 寺社奴婢와 僧侶들이 있었다. 국가가 사원으로부터 몰수한 이들은 규모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기 초 太宗과 世宗代에는 사원정리의 과정에서 몰수한 사사노비들을 관영수공업의 노동력으로 충당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태종 6년(1406)에는 사사

13)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

京外工匠 成籍藏於本曹本司本道本邑

14) 『大典後續錄』 工典 工匠條.

各司匠人 成案藏于本曹本司 公賤亦藏于刑曹 良人兵曹

15)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이들의 신분이 賤人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반 私奴婢 또는 고려 말 寺院奴婢 등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番上立役하고, 입역하지 않는 기간에는 세를 내었으니 그 지위나 신분적 대우가 일종의 公奴婢, 外居奴婢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이들의 식량과 생활 기반을 전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도 국가는 이들의 人身을 私奴와 같이 완전히 구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16)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7月 28日 丁未.

1392년에 편성된 관제에 따르면 수공업과 관련된 관청은 工曹, 尙衣院, 奉常寺, 禮賓寺, 校書監, 繕工監, 軍器監, 司膳署, 司醞署, 長興庫, 義盈庫, 供造署, 都染署, 書籍院, 司僕寺, 濟用庫, 雅樂署 등 17개였다.

노비 8,600여명을 몰수하여 軍器監, 內資寺, 內贍寺, 禮賓寺, 福興庫 등에 배속하였고¹⁷⁾, 태종 15년(1415)에는 80,000여명의 사사노비를 典農寺에 전속시켰다.¹⁸⁾ 이들 중에는 雜役을 지거나 身貢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배속 관청의 성격상 상당수가 관장으로 등록되었을 것이다. 세종 7년(1425), 각 지역에 흩어져있던 사원노비 중 500명을 繕工監 工匠들의 奉足으로 배정하고 기술을 전습하게 한 것 역시 寺奴를 관장으로 동원한 사실을 반영한다.¹⁹⁾

‘僧侶·僧人’출신의 官匠은 실제 승려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원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승려로 統稱된 듯하다. 태조 4년(1395), 大司憲 朴經은 上書에서 “士大夫가 집 한 채를 경영하는 데에도 솜씨가 능숙한 중을 청하여 일을 시킨다”며 궁궐을 조성하는 일에 僧徒를 동원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 또한 태종 6년(1406)에는 別瓦窯를 설치할 때 각 지역에서 僧·匠을 차등을 두어 징발하였다²¹⁾고 전해지는데, 박경이 언급한 ‘僧’과 別瓦窯 瓦匠에 선발된 ‘僧人’모두 사원 소속 수공업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원 출신인 이들이 관장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고려 말 사원수공업의 번성과 관련이 깊다. 사원들은 그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寺院 造營을 위한 조직 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였고, 建築·丹青·石工業 등에 뛰어난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²²⁾ 무엇보다 이들은 農

17)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3月 27日 丁巳.
議政府請定禪教各宗 合留寺社……又將定數外寺社田民 移給定數內各寺 其餘屬公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4月 1日 辛酉.
分屬定額外寺社田口于各司……軍器監屬四千口 每一番四百口 輪次立役 內資(內贍)[內贍] 各屬二千口 禮賓寺福興庫各屬三百口 竝因舊居 綏撫役使

18) 『太宗實錄』卷30, 太宗 15年 8月 29日 癸巳.
刑曹判書鄭易啓 革去寺社奴婢八萬餘口 專屬典農寺 恐不能悉考其生產物故

19)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正月 19日 庚寅.
各道散住革罷寺社奴子一千口 依他例給奉足於繕工諸色匠人 酌量分定 使之傳習……
請令各道姑將五百戶 依他例給奉足上送

20)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2月 19日 癸未.
士大夫營一家 必請僧以役者 手段熟習

21)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1月 28日 己未.
始置別瓦窯……發諸道僧匠有差 使赴其役 忠淸 江原道各僧五十名 瓦匠六名 慶尙道僧八十名 瓦匠十名 京畿 豐海道各僧三十名 瓦匠五名 全羅道僧三十名 瓦匠八名

繁期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에 장기간 동원이 가능하였으므로²³⁾ 국초 新都 건설 등 국가 공역에 대거 동원되었다. 국가는 거대한 토목공사에 투입할 기술자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국초에는 관영수공업 제도가 미비하였고 水災와 旱災까지 빈발하여 民丁의 징발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왕조는 供役僧을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력 징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²⁴⁾

이 밖에 選上奴, 私奴가 관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大典續錄』에는 지방의 선상노를 繕工監, 瓦書, 軍資監, 禮賓寺, 尙衣院 등 수공업과 관련된 각 관부의 差備로 加定하는 규정이 있다.²⁵⁾ 이러한 규정은 선상노를 예비 인원으로 두어 기술자 부족에 대비하고자 하였음을 반영한다. 私奴의 경우, 세종 16년(1434)에 병조에서 군기감 장인 수가 부족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別戶私賤, 즉 외거노비로 결원을 충당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²⁶⁾ 또한 私賤 출신의 공장이 公私의 役을 모두 분담해야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侍丁法을 허가하도록 한 것 역시 私奴 출신의 관장이 있었음을 반영한다.²⁷⁾

한편, 조선의 관장 중 양인 신분인 이들은 비록 그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소위 ‘身良役賤’으로서 종사하는 일에 따라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계층이었다. 본래 수공업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왕실 및 귀족층이 저마다 수공업자를 예속시켜 각종 수공업품을 생산하기도 하였고²⁸⁾ 기술적

22) 全暎俊, 『麗末鮮初 國家 土木工事와 供役僧』 『東國史學』 40, 2004, 198~202쪽.

23) 註 20과 同.

其工匠卒徒 當用數萬人矣 必用農民 以充其數 農必失時 不可不慮也……願令攸司 集僧赴役 更不徵民 以遂其生 則工役不廢而邦本固矣

24) 全暎俊, 위의 논문, 2004, 205~207쪽.

25) 『大典續錄』 刑典 公賤條.

加定選上奴……繕工監差備二十 瓦署差備十四 軍資監差備二十 禮賓寺差備十 尙衣院差備十五

26)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4月 28日 丁卯.

請以良人公賤及別戶私賤成才者 聽各色匠人自告充定 分番立役

27) 『世宗實錄』 卷105, 世宗 26年 閏7月 辛丑.

28) 『三國遺事』 塔像第四,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條.

新羅第三十五景德大王以天寶十三甲午鑄皇龍寺鍾……匠人里上宅下典

중을 주조한 장인이 里上宅의 下典이었다는 표현에서 귀족층이 수공업자를 두고 직접 물품을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남수, 앞의 책, 1996, 278~279쪽.

전문인으로서 관직을 받은 상층 수공업기술인들이 있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시하던 분야였다.²⁹⁾ 그러나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고려부터 農을 本으로, 工을 末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장인은 국가적 통제 아래에서 공물을 생산하거나 국가에 징발되어 신역을 바치는 존재로 지위가 하락하였다. 또한 공장이 관직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도 제정되었다.³⁰⁾ 물론 이 중에도 예외가 존재하였으나³¹⁾ 대체로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에 비해 수공업을 천시하는 관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에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양인 신분의 관장은 鹽干, 鐵干, 墨尺 등 업종에 따라 稱干稱尺하기도 하고³²⁾ “工商賤隸”라 불리는 등 천인과 동격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고려 말부터 所의 해체와 맞물려 성장한 전업 수공업자도 있었으며, 국가에서 기술을 전습시키고자 새로이 선발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초까지만 해도 천민이 대부분이었던 官匠 집단에서 관장수의 감소, 노비 출신 관장의 비능률성 등이 지적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관장 집단 내 비중을 키워갔다.

29) 박남수, 앞의 책, 1996, 303~310쪽.

저자는 「蔚珍鳳坪新羅碑」(524)의 “立石碑人 啄部博士”에서 신라에서의 博士職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봉평비를 세우는 일을 총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에게 啄部の 박사명칭을 주었으므로, 당시 탁부 안에 박사라는 명칭만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었을 것이며, 이미 신라 중고기부터 기술직들이 박사 칭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聖德大王神鍾銘」, 「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 등의 사료에서 8세기 중엽 박사의 명칭이 관등의 높고 낮음에 따라 大博士·次[助]博士 등으로 분화됨이 보이고, 박사의 명칭이 일반 僧匠이나 장인들의 汎稱으로 일컬어지는 등 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30) 『高麗史』 選舉志 限職條.

按令典 工商家 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士齒

31) 『高麗史』 列傳 全英甫.

전영보는 본래 제석원의 종으로서 금박 세공이 생업인 장인이었다. 그는 국왕의 총애를 받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忠宣王 때 大護軍, 忠肅王 때 密直副使, 贊成事 등의 관직에 올랐다.

32) 홍희유, 앞의 책, 2012.

수공업자들 사이에서도 업종에 따라 계층적 차별이 있었다. 군기를 만드는데 종사하는 弓人, 矢人의 경우 수공업자 가운데 으뜸으로 대우받았지만 가죽수공업자인 皮匠, 버들고리짜을 만드는 柳器匠은 고려 이래로 揚水尺, 禾尺의 후손들이므로 하여 천인들만이 되는 수공업자로 고착되었다. 稱干稱尺하는 이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그 역에 있어서 일반 양인보다 천시되었다.

조선의 官匠 수는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에 의거하면 대략 중앙에서 활동하던 京工匠 2,795명, 지방에서 활동하던 外工匠 3,764명으로 추산된다.³³⁾ 장인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군사나 保率·閑役·官屬·公賤으로 합당한 자를 충당하여 정하도록 하였다.³⁴⁾ 이후 세종 21년(1439)에 상의원의 공장 정원을 증원한 사례³⁵⁾나 『經國大典』에 등장하는 수공업 관련 관청의 수를 보았을 때, 관영수공업 정비 과정에서 수공업 담당 기구 수나 정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官匠의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조선의 官匠은 1년 중 일정기간만 국가 관청에서 물품을 제작하였고, 番을 정하여 교대로 복무하는 番次制로 근무하였다. 번차제는 고려의 관장과 비교하였을 때, 조선의 관장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관장의 근무형태는 長番制로서, 번차제보다 장기간 국가 관청에 전속되어 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었다.³⁶⁾ 고려의 상층 수공업자들에게 주던 녹봉의 한 형태였던 ‘工匠別賜’만을 보더라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관장이 1년에 300일 이상 근무해

33) 姜萬吉, 앞의 책, 1984.

저자는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의 기록에 의거하여 경공장, 외공장의 규모를 위와 같이 추정하였다. 경공장의 수는 水鐵匠을 제외한 수치인데, 그 이유는 수철장의 경우 名數가 아닌 戶數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아문의 공장 보유 수를 비교한 결과 군기감, 상의원, 선공감 등 특정 관청에 공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왕실물품을 제작하던 상의원뿐만 아니라 군기 제작·국가 공역을 담당하던 군기감, 선공감 등의 관청 소속 장인의 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관영수공업 체제가 지향하던 바를 짐작할 수 있다.

34) 『大典後續錄』, 工典 工匠條.

諸色最緊匠人有關 勿拘軍士·保率·閑役·官屬·公賤·可當人充定

35) 『世宗實錄』 卷84, 世宗 21年 正月 22日 辛丑.

工曹啓 尙衣院工匠元數四百一名 請加六十六名 以爲定額 從之

36) 홍희유, 앞의 책, 2012.

高麗가 長番制를 실시하였다는 근거는 고려시기 중앙수공업관청에 소속된 工匠 중 指諭, 指諭承旨, 指諭副承旨, 指諭副尉, 指諭承旨同正, 指諭殿前, 指諭內殿前, 行首校尉, 行首副尉, 行首大匠, 行首副匠, 大匠, 副匠, 殿前同正 등의 직위와 직계를 가진 이들에게 “工匠別賜”라는 명목으로 일정량의 녹봉을 지불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점(『高麗史』 殖貨志 祿俸 工匠別賜條), 그리고 大匠, 副匠, 雜匠人 등 일부 工匠에게 武散階에 따른 17結의 토지 수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高麗史』 食貨志 田柴科條)의 두 가지이다. 국가가 교대로 단기 근무하던 장인에게 수조권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고려에서 녹봉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공장은 장기 복무하는 이들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야 했는데, 이에 비해 조선의 번차제는 신분이나 업종에 따라 3番 2朔制 또는 2番 1朔制로 이루어졌다.³⁷⁾ 選上수공업자의 경우 3番 6朔制 또는 2番 1年制 등의 형태로도 근무하였다.³⁸⁾

조선의 관장이 고려의 관장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하였던 것은 조선왕조의 관영수공업 운영 목적 및 관장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관영수공업은 국가의 각종 役事와 수요품 생산을 위해 정비된 제도였다. 따라서 국가가 관장의 인원과 보유기술 등을 정확히 관리하고, 관장을 필요할 때마다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면, 굳이 긴 시간동안 이들을 매어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四民觀에 따른 신분·직업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가가 장번제를 운영하며 관장에게 收租權과 祿俸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 수요품의 조달과 官匠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 아래 관장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職役의 기간을 다한 官匠은 나머지 기간에는 스스로 물건을 제작하여 도성 시전에 판매함으로써 個人 營利를 취할 수 있었다. 즉 관장은 관영수공업 제도 아래에서 국가에 물품을 조달하는 관청 소속 수공업자였지만, 직역기간이 아닐 때에는 민인 일반의 수요를 위해 활동하던 공장이었다는 점에서 고려 장번제하의 관장과는 다른 존재였다.

다만 조선의 관장은 非番日 동안 私的으로 활동하는 대신, 국가에 工匠稅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에서 이미 賦의 보조로서 수공업자와 상인들에게 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국초부터 제시한 바 있으며³⁹⁾, 국가적 입장에서 공장세는 공장을 통제하고 수공

37) 『太宗實錄』卷30, 太宗 15年 9月 3日 丁酉.

今年京中各戶皆難食 軍器監匠人 火燭軍 別軍 兵曹補充軍 司宰監水軍 不在受料之例者 皆許三分放二 隔兩月更代……軍器監匠人 火燭軍 司宰監水軍及失農各官當番軍人 爲半分番

38) 『端宗實錄』卷13, 端宗 3年 3月 10日 乙卯.

繕工監屬木工 分二番 一年相遞立役

『經國大典』兵典 番次都目條.

尙衣院軍器寺弓人矢人 尙衣院軍器寺和會薦狀 三番六朔相遞

39) 『朝鮮經國典』賦典 總序.

曰農桑 賦之本也……曰工商船稅 賦之助也……知賦之所助 則課程不可不立也

『朝鮮經國典』賦典 工商稅條.

업을 管掌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다. 따라서 조선의 官匠들은 직역을 마친 후에는 공장세를 부담하며 영리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세 규정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工匠의 등급 및 坐賈가 이용하는 나라의 점포 칸 수 등을 등록하여 본조 및 공조, 본 도, 본 고을에 보관하여 세를 거둔다……무릇 공장은 관청 일을 한 날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세를 거둔다.⁴⁰⁾

工匠 즉 수공업자에게 公役日數를 계산하여 제하고 세를 받는다는 표현에서 公役日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공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을 想定할 수 있다. 이 점은 고려 말의 모든 수공업자들이 조선 건국 후 일률적으로 官匠이 되었을 것인가, 라는 의문과도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세를 부담하는 공장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가) 공역일을 계산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공역을 부담한 자)
- 나) 공역일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공역을 부담하지 않은 자)

무엇보다 관장은 국가 및 왕실 수요품의 제작을 담당하였으므로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공장만을 선발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국초 모든 수공업자들이 관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 부분은 4장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는 官匠으로부터 楮貨와 銅錢, 米, 鐵 등 화폐와 현물로 다양하게 공장세를 수취하였다. 공장세의 액수는 크고 작은 변동을 거쳐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전국의 수공업자들에 적용되었다. 공장의 경우 상, 중, 하등으로 나누어 매달 저화를 차등 있게 징수하였고, 지방 冶匠의 경우

先王制工商之稅 所以抑末作 而歸之本實
정도전은 또한 工商稅를 제정하는 목적이 ‘末作(工商業)을 억제하여 백성들이 本實(農業)에 돌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였다.

40) 『經國大典』 戶典 雜稅條.
錄工匠等第及坐賈公廊之數藏於本曹工曹本道本邑收稅……凡工匠計除公役日數收稅

鑄鐵匠, 鑄鐵匠, 水鐵匠에게는 규모에 따라 綿布와 正布, 米를 차등 있게 거두었다.⁴¹⁾ 이와 같은 공장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야장의 경우 大治·中治·小治 등 다양한 규모를 갖추어 영업활동을 할 만큼 이미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지방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나름의 상업 활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특히 현물이 아닌 米와 布로 세를 내는 지방 야장의 경우 제작한 물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공장세를 마련하였을 것이므로, 일정 수준의 상업 시설이 지방에서도 발달하고 있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官匠은 각 관청에 등록되어 국가·왕실 수요품을 생산하였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경공장의 경우 30개 관청에 129개 업종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업종 중에는 공장 1인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도 있으나, 서적 출판업이나 야장업과 같이 고도의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하여 여러 공장들이 제작 공정을 나누어 맡는 분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軍器寺, 尙衣院, 司饗院, 繕工監, 兵曹가 특히 많은 관장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관청에 소속된 관장의 수가 전체 관장수의 대략 80%에 육박하였다는 점은 관영수공업에서도 군기 제작, 왕실 물품 제작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가장 컸다는 사실을 방증한다.⁴²⁾

국초 관장은 주로 국가의 新都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瓦窯와 別窯가 설치되었다. 瓦窯는 국가 役事에 필요한 기와를 구워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 반면 別窯는 국가가 도성 내 빈공

41) 註 40과 同.

工匠 上等每朔楮貨九張 中等六張 下等三張 外方治匠 鑄鐵匠每一治 春正布一匹 秋米十斗 鑄鐵匠每一治 春綿布一匹 秋米十五斗 水鐵匠大治春綿布一匹半 秋米六石八斗 中治春綿布一匹 秋米六石二斗 小治春正布一匹 秋米四石六斗
경기와 충청, 강원, 황해도의 야장에게는 米, 布가 아닌 鐵로만 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가까운 지방에서는 공장세를 현물로 거두어 국가의 직접 수요에 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경도와 평안도의 수철장에게서는 布를 거두지 않았다.

42) 『經國大典』에 따르면 군기시 644명, 상의원 597명, 사옹원 380명, 선공감 346명, 병조 261명의 관장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관장의 수를 합산하면 2,228명인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전체 경공장의 수인 2,795명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후 정원의 증감, 관장수의 부족 등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으나 『經國大典』 자체가 이른바 대전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도 당시 조선의 관영수공업 정비 방향과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평민들에게 기와를 염가로 제공하여,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되었다.⁴³⁾ 국가가 민인을 위해 담당 관청을 두어 특정 물품을 제작·저가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수공업을 公的으로 장악하고 활용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수공업을 私的 이익에만 충당하던 고려 말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인의 안정에 힘쓰고자 하였던 조선국가의 지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⁴⁴⁾

국가 방어와 유지를 위한 군기 제작은 관영수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군기시, 선공감, 병조에 소속된 공장들은 군비에 필요한 兵船·甲衣·弓矢·火藥 등의 물자를 생산하였다. 세종은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의 공장을 지방에 파견하여 기술을 전습시키고, 敎習官 등의 관리를 함께 보내어 제조과정을 감독하게 하였다.⁴⁵⁾ 때로는 국왕이 궐내에서 직접 군기 제작에 나설 때도 있었다. 세종은 염초 제작의 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궐내 內司僕 남쪽에 司礮局을 두고 환관에게 염초 제조와 시험을 맡겼으며⁴⁶⁾ 문종은 궐내에서 환관에게 군기 보수와 화약 제작을 담당·감독하게 한 일로 司憲執義였던 申叔舟에게

43) 본래 별요는 태종 6년(1406) 도성 내 환경 정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승려 해선은 당시 도성 내 閭閻에 초가지붕들이 연달아 맞붙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미관상 중국 사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민간에 기와를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별요가 설치되었고, 이후 혁파되었다가, 세종 8년(1426)에 화재 이후 가옥을 보수하기 힘든 빈민들을 위하여 재설치 되었다. 별요 관련 기사는 註 21 ; 『世宗實錄』卷31, 世宗 8年 2月 29日 癸巳를 참조할 것.

44) 別瓦窯의 설치 목적은 본래 민인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工匠의 壟斷 등으로 부유층에 別瓦窯의 기와가 흘러들어가고, 특정 세력이 평민의 이름을 빌려 기와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서 別瓦窯 설치의 근본적인 의도는 국가에서 민인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世宗實錄』卷65, 世宗 16年 7月 2日 丁丑.
兵曹啓……今秋送焰硝匠于平安咸吉江原黃海等道 煮取之法 俾令敎習 從之
『世宗實錄』卷77, 世宗 19年 6月 9日 丁卯.
火炮敎習官朴大生發向平安道……咸吉道則除敎習官 只遣火藥匠
『世宗實錄』卷109, 世宗 27年 8月 21日 壬戌.
分遣監鍊官于諸道 鑄火砲

46) 『世宗實錄』卷108, 世宗 27年 5月 9日 壬午.
肆予於京中 暫試煮之……恐爲倭人所知 欲於內司僕爲之……別置局于內司僕之南 名曰司礮局 命宦官掌其事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⁴⁷⁾ 국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官用 漕運船의 제작 역시 관영수공업 체제에서 이루어졌다.

관장이 생산하던 물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또 다른 영역은 왕실 수요품이었다. 尙衣院과 司饗院은 軍器寺와 繕工監만큼 많은 관장이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이곳의 관장들은 대표적 왕실 수요품인 織物類와 磁器類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의 제작을 담당하였다.⁴⁸⁾ 또한 이들은 왕실 수요품뿐만 아니라 對外貿易에 필요한 물품 제작도 함께 담당하였는데, 당시의 관영수공업이 대외무역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교 정책 및 대외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관영수공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서적과 관련한 업종이었다. 활자의 제작과 제지업, 인쇄업은 유교 국가를 표방하던 조선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을 민인에게 보급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이것은 士大夫가 이끌어가던 조선 사회에서 지배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도 매우 긴요하였다. 세종 16년(1434), 鑄字匠의 처자에게만 월료를 주는 일이 불공평하여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해 세종이 ‘그 일이 중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常例가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활자 제작은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관장의 활동은 일종의 國役이었기에 이들이 제작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나 값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관장은 관청에 복무하지 않을 때 生業으로 삼을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였고, 생계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장의 의무 역시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장기 근속하거나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일부

47) 『文宗實錄』卷8, 文宗 1年 6月 9日 丙子.

言官多以闕內修軍器爲非 蓋惡令宦官監之也 然欲速成 宜付此輩 若付有司 未易就也
이에 대해 文宗은 군기감에 맡기면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성취하지 못하므로 궐내에서 제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48) 『定宗實錄』卷1, 定宗 元年 5月 1日 庚午.

尙衣院 是爲殿下之內帑 衣帶服飾之物 一皆掌之
『經國大典』吏典 京官職條.

司饗院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

49) 『世宗實錄』卷66, 世宗 16年 11月 18日 壬辰.

初給鑄字匠人妻子月料 重其事也 遷延至今 以爲常例

장인에게 雜職遞兒를 지급하여 녹봉을 주기도 하고⁵⁰⁾, 공장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의미로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甕匠·席匠 등에게 保人을 붙여주는 給保制와 弓人·矢人の 잡역을 면제해주는 復戶制 등 관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해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⁵¹⁾

이 중 遞兒職이란 국가번상일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상위 기술자에게 散職과 祿俸을 주는 제도였다. 관장은 녹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가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었다. 체아를 받는다는 것은 受祿을 의미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관부요원에 기용되는 것이었으나, 공장의 규모에 비해 체아직의 수가 매우 적었기에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였다.⁵²⁾ 『經國大典』에 근거하였을 때 공장에게 지급된 체아는 工曹, 校書館, 司贍寺, 造紙署의 장인들 간에 협의하여 번갈아 수직하는 和會遞兒와 司饗院, 尙衣院, 軍器寺, 繕工監, 弓人·矢人の 체아까지 총 61職이었다. 잡직 체아의 운영은 4都目으로 행하였는데, 이 경우 1년을 4번으로 나누어 61×4=244명의 공장이 3개월씩 교대로 녹을 받는 것이었다.⁵³⁾ 이 수치는 2,700여명이 넘

50) 『世宗實錄』卷73, 世宗 18年 閏6月 14日 戊寅.

曩者繕工鑄字匠人 若有功勞 則雖賤口 授以隊副隊長司正副司正之職

51) 『經國大典』兵典 給保條.

京外軍士給保有差……弓人矢人……進獻席匠則同居族親中一人

『經國大典』兵典 復戶條.

以下諸色軍士……並復戶……內弓矢人……同

52) 申幼兒, 「朝鮮前期 遞兒職 運營의 實際」 『韓國史研究』 171, 2015, 181~184쪽.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공장에게 지급된 잡직체아는 그들의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거나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해줄 만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체아직을 운영하였던 것은 국가가 부여한 직역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의 형식이었다. 공장에게 지급된 체아직의 수와 경제적 효력의 한계는 이후 관장의 이탈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3) 「朝鮮前期工匠考」(姜萬吉, 1961)에서 체아직은 소수의 공장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부요원으로 기용되는 첫 관문이자 기술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함으로써 받게 되는 급료로 보았다. 즉 체아를 받는 공장은 체아직원으로서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서는 체아직을 이용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장을 정부에 긴박시켜 관장화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朝鮮前期 遞兒職 運營의 實際」(申幼兒, 2015)에서는 잡직 체아의 운영 방식을 都目에 따라 정해진 기간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수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당시 경공장의 인원 규모에 비추어 계산함으로써 체아가 공장들의 경제적 형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는 관장의 규모

어가는 전체 경공장 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치였다. 성종 대에는 藥匠 정원 180명에 체아가 세 자리뿐이고, 그마저도 다른 장인들과 교대로 受職하므로 종신토록 체아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을 만큼 체아의 수가 워낙 적어 모든 공장에게 체아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였다.⁵⁴⁾

이 밖에 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공역이나 물품을 만드는데 동원되었던 장인들의 공로를 치하·격려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國葬을 치러 殯殿과 山陵을 조성하였거나, 궁궐이나 관청 건물의 수리를 마쳤을 때, 宗廟의 祭器, 火砲, 鑄鐘所의 악기 등을 제작하였을 때에 포상을 내린 기록들이 있다.⁵⁵⁾ 포상 물품으로는 米, 麻布, 綿布에 綵緞 등 다양하였으며, 잔치를 열어 술과 음식을 하사하기도 하였다.⁵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은 고려 말의 폐단을 구제하고 신 국가의 기반 확립을 위해 官營手工業 制度를 정비하였다. 관영수공업에 소속된 수공업자들은 官匠으로서 일정 기간 國役을 담당하고, 그 외 기간에는 民間에서 일상 수요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생업을 유지하였다. 官匠이 관청수공업장과 민간 경제, 양쪽에서 번갈아 활동하였던 특성은 이후 관영수공업 제도에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와 체아직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후자의 견해에 따라 체아직을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체아의 특성이 조선 전기 관장체제의 변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본문에 등장하는 계산법 역시 이 연구를 참조하였다.

- 54) 『成宗實錄』 卷75, 成宗 8年 1月 29日 戊辰.
藥匠元數一百八十 而只有八品遞兒二 七品遞兒一 與雜匠和會受職 或終身未受遞兒者 誠爲可悶
- 55) 장인에 대한 포상 관련 기록은 아래의 사료를 참고할 것.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12月 30日 己酉.
『世宗實錄』 卷10, 世宗 2年 10月 1日 丙申.
『世宗實錄』 卷61, 世宗 15年 9月 18日 丁酉.
『成宗實錄』 卷157, 成宗 14年 8月 3日 癸亥.
- 56)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3月 24日 戊申.
『成宗實錄』 卷252, 成宗 22年 4月 5日 庚戌.

3. 官營手工業의 動搖와 官匠 離脫

鄭道傳이 구상하고 조선왕조가 정비한 관영수공업 제도는 『經國大典』에 그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이른바 ‘經國大典體制’ 속에서 정립되었다. 국가는 末業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허용선 안에서 工·商業을 운용하고 농민의 逐末을 억제하고자 하였다.⁵⁷⁾ 이와 같은 관영수공업 제도는 『經國大典』의 내용으로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나, 『經國大典』이 최종 정리된 成宗朝부터 이미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토지문제와 부세체계 등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변동하는 사회상 위에서 국가가 지향하던 務本抑末의 의도는 관철되기 어려웠고, 농업·상업과 함께 수공업 분야 역시 동요하였다. 이 장에서는 관영수공업계에 일어난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당시 사회경제적 변동과 연계하여 보고자 한다.

관영수공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官匠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국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관장을 동원하기 위해 기술력을 갖춘 충분한 인원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영수공업 체제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관청에 소속된 관장 인원의 증감 상황과 그들의 복무 실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관장의 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工曹, 軍器寺, 尙衣院 등 수공업 관련 관청들은 세종 대부터 여러 차례 관장의 定員이나 감독관직의 증설을 건의하였다. 주로 관장 수의 부족과 물품 생산량 증가 등이 이유가 되었는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제로 각 관청의 공장 정원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세종 7년(1425), 공조는 현재 공장의 인원수가 이전에 정해놓은 것이라 인원이 부족하므로 그 수를 조정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의 추가 모집, 闕員 대비 방안 제시 등 인원수를 조정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⁵⁸⁾ 세종 13년(1431)에는 吏曹의 청에 따라 신설한 세

57) 朴平植, 앞의 책, 1996.

58)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4月 28日 丁卯.

別窯의 別監을 증원하기도 하였으며⁵⁹⁾ 세종 16년(1434)에는 군기감 장인의 수가 절반이나 감소하자 병조와 군기감의 청에 따라 공장의 수를 300여명 증원한 일도 있다.⁶⁰⁾

물론 모든 관청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종 1년(1419)에 공조가 상의원 장인들의 수는 功을 헤아려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인을 쓸데없이 늘리지 말 것을 청한 일,⁶¹⁾ 성종 13년(1482)에 尙衣院 別坐 2인을 늘린 데 대해 經筵에서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폈던 일 등이 그 사례이다.⁶²⁾ 당시 持平 丘夙孫과 領事 洪應은 進上品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득이 장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감독하는 관직을 늘리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들 사례는 각 관청이 담당한 일의 공적 중요도에 따라 소속 官匠의 증원여부가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공조, 별요, 군기감의 사례들은 軍器나 都城民에게 제공할 기와 등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분야였기에, 장인이나 별감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왕실 수요품을 제작하는 상의원의 경우, 신료들이 장인의 수를 증원하거나 감독관직을 신설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편 것이다.

이와 같이 15세기 전반부터 官匠 수가 감소하거나 작업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관청들은 인원을 새로 모집하거나 官匠 정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官營 생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관장 수의 부족은 관장들의 恣意的인 避役과 離脫, 특정 관청에 대한 選好 등으로 발생한 관청별 인원의 편중, 일반민들의 기피와 기술 전승의 어려움으로 발생하게 된 후임자 부족 문제 등에서 기인하였다.

工曹啓 曹屬諸色匠人 分其所任緊緩 已曾酌量定額 然額內不足者頗多
59) 『世宗實錄』卷53, 世宗 13年 7月 9日 辛未.
吏曹啓 三別窯因新設事煩 但以別監二員 分左右考察燔瓦爲難 請加設二員 從之
60) 『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6月 11日 丙辰.
兵曹與軍器監提調 議工匠激勵及加數條件以啓……前此本監匠人七八百餘名 今不過三百餘名……已上在前匠人二百九十三 加屬匠人三百十
61) 『世宗實錄』卷4, 世宗 1年 7月 29日 壬申.
工曹啓 尙衣院匠人量功定額……其數外汎濫求屬者 一皆禁斷
62) 『成宗實錄』卷137, 成宗 13年 1月 22日 辛卯.
夙孫曰 工匠宜多設 官員不可加也 應曰 今雖爲無祿官 後當拜祿官 果不可加設也

관장 수의 부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앞서 언급하였던 세종 7년(1425)부터이다. 공조 소속 官匠의 수가 부족해지자 공조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良人과 公賤·外居奴婢를 구분하지 말고 재주가 있다면 여러 분야의 공장들이 스스로 아뢰어 정원에 충당하게 하고 번을 나누어 입역시키게 할 방안을 만들어 청하였다.⁶³⁾ 관장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현직 공장의 피역과 이탈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세종 16년(1434) 병조의 보고를 보면, 군기감은 본래 7~800여명의 장인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그 수가 차츰 줄어 어느덧 3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었다.⁶⁴⁾ 무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줄어든 것이다. 병조가 이렇듯 장인이 줄어든 상황에 대해 ‘그 去官한 자가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천거하고 도망하였다’⁶⁵⁾라고 표현한 것은 관장들이 자의적으로 이탈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관장의 자의적인 이탈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에도 자연히 영향을 미쳤다. 담당 관청인 형조가 이탈한 공장들을 제대로 추쇄하지 못하여 野人과의 무역에 차질을 빚게 되자 공조는 이를 市廛의 상인들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助役’이라 칭하며 시전의 상인들이 판매해야 할 물건을 빼앗아서 국가의 쓰임에 제공하는 민폐를 끼친 것이다. 세종 29년(1447), 국왕이 工曹에 내린 전지에 이런 사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여러 공장을 능히 추쇄하지 못하여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못하여, 野人

63) 註 58과 同.

工曹啓……請以良人公賤及別戶私賤成才者 聽各色匠人自告充定 分番立役

64) 註 60과 同.

兵曹與軍器監提調……前此本監匠人七八百餘名 今不過三百餘名

이 기사에서는 병조와 군기감제조가 의논하여 당시 전체 군기감 공장 293명에 310명을 증가시키기로 하여 군기감 공장이 603명이 되는 것이었다. 기사에서 각각의 공장이 증가한 수와 그 합계에 대한 언급이 계산으로 맞지 않아 정확한 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공장의 수가 감소하던 추세가 세종 대에도 발견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사료상 공장 수의 계산에 대한 문 제점은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姜萬吉, 1984)에서도 언급되었다.

65) 註 60과 同.

其去官者 擧人自代 逃亡

에게 賜與할 물건과 여러 別例 등의 일을 市廛의 사람으로써 助役이라 일
친고 市人이 판매하는 물건을 빼앗아서 그 용도에 제공한다……66)

관장 현원의 부족은 피역과 도망만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었다. 소
속 관청에 따라 관장의 처지나 경제적 대우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관청
들에 대한 관장의 好惡가 있었다. 특히 官匠들은 작업이 고된 관청에 소
속되는 것을 기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 관청을 옮길 시도를 하였
고, 옮기는 데 성공하는 이들도 있었다. 성종 18년(1487), 特進官 金謙光
은 선공감 장인에게 주던 保丁(保人)이 없어진 뒤 장인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고하며, “세력이 있어 강한 이는 피를 써서 벗어나고, 남아 있
는 자는 잔약하고 용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장 중 의도적으로 역을
기피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반영한다.67)

특히 일이 고되고 책임이 막중한 軍器監은 기피의 대상이었다. 군기감
장인은 다른 관청의 장인들보다 경제적인 대우가 좋지 않은 반면, 부담
하는 작업의 양은 더 많은 편이었다. 尙衣院, 工曹, 鑄字所의 장인들이
다른 역 없이 두세 끼의 식량과 賞職을 받는 데 비하여, 군기감은 5일마
다 入番하면서도 한 끼의料만을 받고 날마다 맡은 일이 있는데도 때를
가리지 않고 綵棚과 儺禮를 전적으로 맡아하였다.68) 이러한 이유로 군기
감 공장 중에는 기술이 숙련되었더라도 가세가 부강하여 형편만 가능하
다면 일이 더 쉬운 곳으로 投託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새로 소속
된 공장들도 모두 일을 면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69) 이 밖에 관장이지
만 그 신분이 私賤인 경우, 주인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代役을 세우고

66) 『世宗實錄』卷115, 世宗 29年 3月 23日 乙酉.

諸色工匠 不能推刷 有闕不補 至有野人賜與之物及諸別例等事 以市裏人 稱爲助役
據奪市人販賣之物 以供其用

67) 『成宗實錄』卷206, 成宗 18年 8月 12日 己卯.

特進官金謙光啓曰 繕工匠人 今無保丁 故豪强者規免 所存者殘劣 今方改軍籍時
請仍舊給保 以優其業

68) 註 60과 同.

尙衣院工曹鑄字所匠人無他役 而分番役使 或受三時之料 或受兩時之料 或受賞職
本監匠人五日相遞入番 只受一時之料 各有日役 而無時綵棚儺禮 專掌爲之

69) 註 60과 同.

故其中才熟富强者 投屬歇處 新屬者亦皆窺免

피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端宗 즉위년(1452), 知敦寧府事 姜碩德이 자신의 동서 朴去踈의 종과 유모가 각각 紫門軍器監의 鞍匠과 禮賓寺의 婢로 사역되는 것을 조카 姜孟卿과 논의하여 대역을 시키고 감추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다.⁷⁰⁾

또 다른 문제점은 후임 공장의 부족이었다. 앞서 언급한 세종 7년(1425) 공조의 건의 사항에는 당시 金箔匠, 鍊金匠, 螺鈿匠, 筆匠, 印匠, 紅靸匠 등 특정 분야의 후임 공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앙 관청의 奴子를 견습생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⁷¹⁾ 또한 성종 16년(1485)에는 호조판서 李德良 등이 공조 여러 부서의 전습 장인이 외방의 奴子로 정해져있어 기술 전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서울에 사는 이들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였다.⁷²⁾ 이들 사례는 당시 관장 간의 기술 전습이나 후임 공장을 두는 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후임 공장의 부족 문제는 특정 분야에서는 직이 없어질까 하는 우려로 변질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성종 8년(1477), 병조에서는 세종대에 비해 藥匠의 처우가 낮아지고 가계가 궁핍해진 현실에 대해 “젊은 사람은 곁에서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죽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며 약장의 직업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사람들이 약장의 자리를 모두 싫어하고 元額 180명 중 80명만이 남았을 정도로 약장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떨어져 있었다.⁷³⁾ 이처럼 관장은 국초 정비된 공장의 元額에서 그 實額이 날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의 관영수공업 제도가 국가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70) 『端宗實錄』卷4, 端宗 卽位年 10月 29日 丁巳.

有去踈之奴 以鞍匠 役于紫門軍器監 碩德通書于姜孟卿……孟卿遂親啓令勿役 又去踈乳母 禮賓寺婢也 曾令他婢代役 後皆藏匿

71) 註 58과 同.

其中如金箔匠 鍊金匠 螺鈿匠 筆匠 印匠 紅靸匠等無私習者 以各司年少奴子於定額內 加數傳習

72) 『成宗實錄』卷174, 成宗 16年 1月 20日 癸卯.

且工曹諸色傳習匠人三百 以外方收貢奴子 擇定已久 而無有成才 臣等意 以京居可學者擇定 而外方奴子 官收其貢 則其於工事 易肄 而國亦有益矣

73) 『成宗實錄』卷75, 成宗 8年 1月 29日 戊辰.

年少者傍觀指笑 誓死不入 恐藥匠之業 從此廢絕……故人皆厭之 元額一百八十 而時屬者八十人

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도 운영의 핵심 요소인 관장 인원의 감소는 국가의 수요품 제작에 차질을 가져왔고, 결국 시전상인에게서 助役을 명분으로 물품을 據奪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국가가 정비해놓은 제도에서 관장이 이탈하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관영수공업의 운영상 문제점과 당대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조선 전기 관영수공업 제도의 특성과 운영상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관공장제도 아래에서 관장이 부담한 身役의 고충과 그로 인한 생계의 위협은 관영수공업 제도의 운영에 항시적인 문제 요인이었다. 관장은 본래 소속 관청에서 番上日에만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국가적 행사나 공역이 있을 경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을 맡기도 하고 정해진 복무일 이상으로 매어있게 되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군기감의 일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관아의 장인들이 모두 군기 제작에 동원되고⁷⁴⁾, 군기감 장인들이 綵棚과 儺禮까지 도맡아 하였다는 기록⁷⁵⁾과 같이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관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관영수공업 제도의 운영상 役 부담의 不均 문제와도 연결된다. 번차제의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관장 간 기술력의 격차 등을 이유로 하여 지켜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장 집단에 私奴 출신의 공장도 편제하였을 만큼 조선왕조에서는 관영수공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따라서 국가 수요품 제작에 있어 우수한 관장을 기간을 어겨가며 지속적으로 복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앞선 姜碩德의 사례와 같이 배경세력을 가진 특정인을 역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관청으로 이속시켜주는 등의 운영상 맹점들은 역의 불균한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운영상의 문제점 외에 순수한 직역 자체의 고충으로는 焰硝匠, 藥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군기감 소속 장인 중 일부는 갑옷이나 활, 병선, 화포 제작, 염초 끓이는 방법 등을 전습시키기 위하여 지방으로 파

74) 『太宗實錄』卷13, 太宗 7年 1月 19日 甲戌.

軍器監 專掌兵器 造作甚多 其繕工監各司屬匠人及諸處閑役匠人 盡屬軍器監 專爲造作

75) 註 60과 同.

건을 가기도 하였다. 세종 16년(1434)에는 염초장을 平安·咸吉·江原·黃海道에 보내어 당염초를 끓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익히게 하였고, 세종 19년(1437)에는 火砲 敎習官을 평안도에, 火藥匠을 함길도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세종 27년(1445)에는 여러 도에 監鍊官을 보내어 화포를 주조하게 한 기록도 있다.⁷⁶⁾ 특히 약장은 병기 제작 및 사용법을 가르치는 임무를 위해 赴防하는 일이 많아 고역이 심하였다. 성종 8년(1477) 병조에서는 군기시 제조의 말을 빌려 약장의 고충을 언급하였는데, 약장은 邊方에서 유사시에 직접 화포를 가지고 선봉으로 나아가고 후퇴할 때에는 뒤를 방어한다고 하였다. 그 하는 일이 잡종 군직인 彭排와 같음에도 홀로 약장으로 불리니, 팽배와 일은 같아도 이름은 다르다고 한 데에서 약장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⁷⁷⁾

공장에게 과도한 역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종 15년(1415)에 江原道 都觀察使 李安愚는 각 지방에 비축한 군기가 있는데도 매일 月課軍器를 만들기 위해 冶匠을 밤낮으로 관청에 매어두어서 공장들이 생계를 잃고 그 처자가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할 수 없다⁷⁸⁾고 하였다. 또한 성종 16년(1485)에는 평안도 영변에서 水鐵匠 朴亨孫이 가혹한 부역과 사냥으로 인한 贖錢 징수 등 過敏에 시달리다가 절도사 鄭蘭宗에게 원한을 품게 되어 그가 모반을 꾀하였다고 誣告하였다가 斬不待時를 당한 사건까지 있었다.⁷⁹⁾ 비록 단편적인 사건들이지만 外工匠들

76) 註 45와 同.

『世宗實錄』 卷65, 世宗 16年 7月 2日 丁丑.

兵曹啓……今秋送焰硝匠于平安咸吉江原黃海等道 煮取之法 俾令敎習 從之

『世宗實錄』 卷77, 世宗 19年 6月 9日 丁卯.

火炮敎習官朴大生發向平安道……咸吉道則除敎習官 只遣火藥匠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8月 21日 壬戌.

分遣監鍊官于諸道 鑄火砲

77) 『成宗實錄』 卷206, 成宗 18年 8月 12日 己卯.

邊方有事 則藥匠親帶火砲 進則爲先鋒 退則爲捍後 與彭排所業無異 獨稱匠人 事同名殊

78) 『太宗實錄』 卷29, 太宗 15年 4月 20日 丁亥.

月課軍器 國家禦侮之備 誠不可一日廢其修造也……皆有其備 而節制營與界首各鎮 日常打造 其爲冶匠者 日夜在官 失其生理 未免妻子啼飢之嘆 亦可憫也

79) 『成宗實錄』 卷178, 成宗 16年 閏4月 5日 乙酉.

問所以誣告之情 則曰欲陷害節度使也 問怨懟節度使之由 則曰 我實寧邊水鐵匠 節

이 겪어야 했던 괴로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 관장 중 選上奴 신분의 경우, 번차의 기간이 일반 경공장보다 길었으므로 더욱 괴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세조 때 淸風郡 選上奴였던 延金의 사례가 있다. 세조는 길에서 선상노 연금을 만났는데, 그는 번상하여 군기감에서 역사하다가 다시 조지서로 옮겨진 처지였다. 연금이 관장으로 부역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통곡하자 세조는 그에게 襦衣와 음식을 내려주고, 군기시 관리 및 청풍의 京邸吏 등 관련자들의 죄를 劾問하게 하여 연금을 돌려보냈다.⁸⁰⁾

관장은 때로 소속 관청의 관리나 권세가들의 전횡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특히 도성의 양반관료나 지방관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관장에게 사사로운 물건을 제작하게 하거나, 개인의 부를 쌓는 데 수공업 기술을 동원하였다. 활 만드는 장인을 불러 사사로이 활을 만들게 하고 官物로써 대가를 치렀다는 鎭安縣監 洪思悌에 대한 기록이나,⁸¹⁾ 開城府留守로 있을 때에 사사로이 工作色을 설치하여 각종 물건을 제작하고, 부종의 緞子를 가지고 지붕 있는 가마를 만드는 등 이익을 도모했다는 兵曹判書 李宣에 대한 고발 상소,⁸²⁾ 工曹判書 梁誠之가 典校署의 提調로 재직하면서 전교서의 종을 자기 집에서 부린 일 등으로 大司諫 成倪의 탄핵을 받은 일 등이 그 예이다.⁸³⁾ 특히 『成宗實錄』의 韓山君 李永垠에 대한 卒記는 전횡을 일삼으며 공장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관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영은은 刑曹參判이 된 후 鞋匠에게 가죽을 주어 신을 만들게

度使役我太苦 或因 山行徵贖大重 以此含怨……乃爲此事 云云

『成宗實錄』 卷178, 成宗 16年 閏4月 20日 更子.

『成宗實錄』 卷192, 成宗 17年 6月 5日 戊寅.

80) 『世祖實錄』 卷44, 世祖 13年 11月 19日 辛巳.

淸風郡奴延金也 以選上奴 役于軍器監 今又移役造紙署 不勝飢寒 是以哭之 卽命給襦衣一領 令承傳宦官李得守饋飯 命劾軍器寺官吏及淸風京邸人等 不能存恤之罪 遂放還

81) 『世宗實錄』 卷23, 世宗 6年 2月 28日 甲戌.

鎭安縣監洪思悌……引入弓匠于衙內 改造私弓 償以官物

82) 『世宗實錄』 卷116, 世宗 29年 閏4月 7日 戊辰.

兵曹判書李宣爲開城府留守……設工作色 私造雜物……且以府中段子 造有屋轎子

83) 『成宗實錄』 卷103, 成宗 10年 4月 26日 壬子.

且梁誠之 提調典校署 以署奴 役使于家 此皆非廉介者所爲

하고 얼마의 값을 치르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약속을 어기고 값을 깎았으며 신 만드는 일을 엄하게 독촉하였다. 게다가 작업이 더디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장인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다.⁸⁴⁾ 그가 형조참판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경우의 옥사가 많았다고 하니 공장들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시달렸을지 예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종 2년(1454)에 군기감 관리들이 山棚을 설치할 때에 장인들에게 함부로 綿布나 銅器를 징수하여 酒食費로 사용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일⁸⁵⁾이나, 세조 2년(1456) 병조의 계문 내용 중 節制使들이 民事에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서 공장을 모아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등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⁸⁶⁾ 태종 15년(1415) 議政府와 六曹가 올린 조목 중 여러 장인에 대한 使令과 丘從을 금하자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일찍이 반영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⁷⁾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공장의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번지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공장의 수는 3,000여명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며, 사대부 관료도 아닌 이들의 생계를 국가가 전부 보장해주는 것은 무리였다. 물론 일부 관장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遞兒나 月料 지급, 포상 등을 하였으나 이는 특정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대다수의 관장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후 체아직 증설이나 월료 지급 요청 등 관장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점은 관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간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다는 것을 반영한다.⁸⁸⁾ 관장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84) 『成宗實錄』卷12, 成宗 2年 閏9月 19日 戊午.
爲刑曹參判 索賂無厭 嘗授鞋匠皮 令造鞋 約以給價若干 已而減價 督造甚嚴 少稽遲 輒囚之 其治獄 多類此

85) 『端宗實錄』卷12, 端宗 2年 10月 29日 丁未.
軍器監官吏等……又於結山棚時 濫徵綿布銅器於匠人 爲酒食費

86) 『世祖實錄』卷4, 世祖 2年 5月 27日 乙未.
今節制使……民事則略不加意……廣招工匠 無所不爲

87) 『太宗實錄』卷29, 太宗 15年 3月 8日 丙午.
諸色匠人除工作外 使令及丘從禁斷

88) 『文宗實錄』卷5, 文宗 卽位年 12月 7日 丁丑.
工曹工匠等嘗上言 請給遞兒職 命議諸政府 僉曰 可依上言 上曰 工曹工匠授職 前所未聞 曾設遞兒處 亦欲減之 況新設乎 遂不允

것은 곧 이들이 떠받치고 있던 관영수공업 제도의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관영수공업 아래에서 국가에 등록되어있던 관장들이 이탈할 배경이나 동기가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관영수공업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장의 고충만으로 이탈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도권으로부터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생업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장이 관영수공업 제도에서 이탈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이자 보다 강력한 요인은 당시 도성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장은 제작한 물품을 수요층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남겨야만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업과 상업은 그 특성상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15세기 중반부터, 그리고 16세기에 접어들어 더욱 확장된 도성 상업의 규모는 관장의 제도권 이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 도성 상업의 발달 아래에는 동시대의 토지, 농업, 부세 체계 등의 변동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변화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 전기의 상업은 수공업과 함께 국가가 장악하고 통제하는 ‘抑末’의 영역이었으나, 당시 토지와 농업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던 변동과 연계하여 商人·交易機構·商品交易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여 갔다.⁸⁹⁾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지배층과 민인 일반의 축말 풍조가 확산되어 간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변동이 바로 과전체제의 붕괴로 나타난 수조권적 지배 질서의 약화와 소멸이었다.⁹⁰⁾ 수조권적

『端宗實錄』卷13, 端宗 3年 3月 10日 乙卯.

然其石工爐冶匠功勞與木工不異 而獨不給遞兒職未便 請木石工爐冶匠合計仕日 以仕多者爲先敘用

『世祖實錄』卷21, 世祖 6年 8月 1日 甲辰.

兵曹啓今將汰冗東西班各品及革罷上林園職各品祿科移給加設內禁衛及各處匠人遞兒節目

체아는 증설하더라도 절대적인 증가폭이 크지 않아 공장들의 생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잡직으로 체아를 늘리는 것에 대한 관료들의 반발이 있어 관장이 받는 체아의 수를 늘리는 일은 이후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89) 朴平植, 앞의 책, 지식산업사, 1999, 110~118쪽.

90) 李景植, 「朝鮮前期 土地의 私的 所有問題」,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 [II], 지식산업사, 1998.(『增補版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에 재수록.)

질서가 붕괴되자 王室, 官人 士大夫, 土豪에 이르는 지배층 전체가 토지 소유권을 추구하고 개간과 토지매득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였다.⁹¹⁾ 이들은 지주제를 확대하여 경제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山林川澤 등 토지 이외의 생산 수단, 또는 물산의 생산·교환 과정인 末業에서도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⁹²⁾ 관인 사대부 계층의 상업 참여는 성종 대 이후 대중국 무역과도 연계되어 私貿易을 통한 殖貨行爲로 확대되었다. 지배층의 적극적인 상업 참여는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고자 함이었으며, 이후 전국적 교역망과 유통경제의 발달 속에서 공납제에도 개입하여 代納·防納 활동을 통해 재부를 축적하였다.⁹³⁾

이처럼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지배층의 식화풍조는 당시 민인 일반의 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地主佃戶制 아래 편입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을 가진 농민들은 소토지 경영을 통해 自己經理의 자율성을 얻게 되었고 剩餘物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졌다. 이에 소상품생산 및 교환을 추구하는 민인들의 촉발 경향이 확산되어, 도성 상업 인구의 증가 뿐 아니라 장시의 출현과 확산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었다.⁹⁴⁾ 태종 조에 조성한 시전이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은 성종 조에 규모를 확장하고 구역을 재배치할 만큼 도성의 경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⁹⁵⁾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수공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양적으로는 활동 규모의 확대를,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성 시전은 상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판매 물종이 증가하였고, 부세체계의 변동에 따라 代納·防納·收布·京中質納 등 다양한 형태의 부세 납부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⁹⁶⁾ 대납과 방납은 민간의 상업 시설인 시전에서 공물의 상품화, 즉 국가에 조달할 만큼의 품질을 갖춘

91) 李景植, 「地主制의 展開와 農村市場」 『(增補版)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92) 김선경, 「朝鮮前期의 山林制度—조선국가의 山林政策과 인민지배」 『國史館論叢』 56, 1994 ;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16, 1995.

93) 朴平植, 앞의 책, 지식산업사, 1999, 322~326쪽.

94) 주 91과 同.

95) 朴平植, 앞의 책, 지식산업사, 1999, 103~108쪽.

96) 朴平植,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 지식산업사, 2009, 20~23쪽.

제품들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외무역의 발달에 따른 도성 내 사치풍조의 확산으로 織物·磁器類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국내 수공업의 기술 수준도 함께 발전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변화 가운데에는 국초 末業의 전담자이자, 비번 기간 동안 민간에서 私的 활동을 이어가던 官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성 상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상업 인구가 증가하던 상황에서 관장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얻는 경제적 대가 역시 늘어났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동 상황이 관영수공업 제도의 변동과 관장 이탈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수조권의 소멸 후 양반 관료들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권에 집중하였듯이, 사농공상의 말단에 위치한 工匠들이 자신들의 경제 기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관장들이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에서의 이탈 또는 사적 활동의 반경을 최대한 넓히는 일이 필요하였다. 관장은 私的 활동의 비중을 증대시켜가며 영리 추구에 힘썼고, 이들이 自己經理를 통해 얻은 경제적 대가는 그동안 대가가 없거나 매우 적었던 官匠 활동보다 큰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특히 관장 중 왕실 수요품이나 사치품 등 도성 내 수요가 높은 특정 품목을 생산하던 이들의 경우,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민간 시장에서의 활동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구매자가 늘면서 직접 운영하는 개인 점포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공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재부를 축적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장으로서의 활동은 점차 기피하며, 1년 내내 工匠稅 또는 商稅를 부담하는 상인으로 전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경국대전체제가 갖추어지는 시점에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국가가 수공업을 관장하고 통제하고자 정비한 관영수공업 제도가 정립됨과 거의 동시에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장의 이탈은 이르게는 세종 대부터 단편적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성종 대에 그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집권 국가로서 조선이 가지고 있던 ‘務本抑末’의 구상에 따라 수공업

을 편제하였음에도, 그 제도가 15세기 현실 속에서 나타난 다른 경제적 변화들과 맞물려 구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편성한 관영수공업 체제 속 관장의 존재가 갖는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官匠은 국가의 공적 관리를 받았으나 근무 형태에서 개인 활동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그러한 私的 활동의 기간 역시 관장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같거나 그보다 긴 편이었다. 즉 조선 국가가 관영수공업 체제를 정비한 시점에서부터 관장은 민간 상업계에서 활동할 자율성이 용인된 존재였고, 이들의 이탈 가능성 역시 내재되어 있었다.

관장들이 관영수공업 제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자 국가는 수공업품의 생산과 공급 방식, 관장 관리 방침 등을 조정해가며 변화에 대응하였다. 관장의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15세기 초중반 무렵에는 국가가 이탈하거나 도망간 공장을 직접 推刷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市人에 대한 助役 폐단이 일어나자 공조에 내린 전지에서 ‘附籍工匠’ 즉 명부에 등록된 관장을 낱낱이 추쇄하여 일을 시키도록 지시하였다.⁹⁷⁾ 또한 문종 1년(1451)에는 의정부에서 형조의 呈文을 보고하며 지방의 公私奴婢와 역이 있는 양민들이 피역을 위해 도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강력히 추쇄하고, 이들의 피역을 엄단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때에 ‘幽深山谷’에 사는 ‘各色工匠’의 집까지 모두 아울러 추쇄하여 호적을 바르게 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점에서 피역한 관장들을 대체적으로 추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⁹⁸⁾ 왜란 직후에도 관장을 추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光海君 9년(1617)에 사간원은 載寧郡守 權益中의 파직을 청하면서, 그가 공조에서 공장을 추쇄하는 일로 낭관을 파견하였을 때 길가는 사람 보듯이 하여 접대하지 않고, 응당 시행해야 할 사목을 전혀 거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⁹⁹⁾ 이때까지도 국가에서 관장 추쇄를 위한 조치

97) 『世宗實錄』卷115, 世宗 29年 3月 23日 乙酉.

病民害政 莫此爲甚 今後市人助役 一皆禁斷 附籍工匠 一一推刷使喚

98) 『文宗實錄』卷6, 文宗 1年 3月 24日 癸亥.

以至幽深山谷各色工匠之家 竝皆推刷 以正戶籍

99) 『光海君日記』卷116, 光海 9年 6月 14日 丁未.

載寧郡守權益中……工曹以推刷工匠事 委遣郎官 則視如路人 不爲接待 應行事目 專不舉行

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권 국가로서 관영수공업 체제를 유지하는 한 마땅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피역한 관장을 찾아내고 관영수공업 체제를 온전하게 복구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¹⁰⁰⁾ 정부가 공적 체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도망한 공장들을 추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 수요품을 市塵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조달 방식을 변형시켜갔기 때문이다. 中宗 26년(1531)에 執義 梁淵이 국가에서 쓰는 잡용 물건을 모두 시전에서 사들이는 폐단에 대해 비판하자, 종종 역시 정해진 貢物이 회계 문서에 실려 있는데도 쓸 때에는 번번이 모두 사다가 쓴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¹⁰¹⁾ 이는 국가의 과도한 비용지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시전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하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물품의 경우 시전 구입이 어려울 때에는 민간의 공장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하였다. 宣祖 26년(1593)에는 備邊司가 중국에서 公私를 막론하고 민간에 화약을 제조하게 한 예를 들며, 傳敎로서 기한을 정하여 私造하여 관에 납품하게 하거나 혹은 국가가 전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선조가 허용한 것이다.¹⁰²⁾ 물론 이 경우는 倭亂이라는 戰時的 특수성 때문에 관영수공업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영수공업 운영에 이상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조달 방식의 한 가지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宣祖朝에는 駙馬들의 집을 모두 값을 주고

100) 당시 국가가 이탈한 관장을 적극적으로 추쇄하지 못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국가가 관장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다. 관장에게는 국가가 설정한 役이라는 의무가 있었으나,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과도한 역의 압박은 큰 강제성을 갖지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 동기로 이탈한 관장들을 추쇄하는 데에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101) 『中宗實錄』卷71, 中宗 26年 6月 5日 戊午.
執義梁淵曰 臣聞國家雜物 皆買于市塵云 厥弊不費……上曰 常貢之物 雖載在會計 而及其用之之時 輒皆買用

102) 『宣祖實錄』卷41, 宣祖 26年 8月 6日 丁亥.
第聞中朝 則勿論公私 皆自煮造民間……依傳敎 限近年私造納官 或轉賣事 枚舉行會 15세기 관영수공업의 변동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선조 대의 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 차이로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료에 등장하는 물품 조달 방식이 관영수공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에 따른 것이므로 한 가지 예로서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시하였다.

“私營”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¹⁰³⁾는 기록이 있다. 본래 宗親이나 儀賓의 가옥은 국가에서 관장을 동원하여 조성하였는데, 宣祖朝부터 이를 私營體制에 맡겨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私營은 민간 공장에게 제작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장을 이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국가에서도 당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장의 이탈을 인정하고, 관영수공업 체제로 운영하던 부분 중 일부를 民營手工業者에게 맡기는 등 정책을 조정하여갔음을 반영한다.

이처럼 국가의 시전 또는 사영 생산방식을 통한 수공업품 조달을 보았을 때, 국가에서는 추쇄한 관장을 관영수공업 체제에 복구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거처를 확인하여 장적에 기록하고 공장세를 확실하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물론 이는 관장의 신분에 따라 그 처리방식이 달랐을 것이다. 예를 들면 노비 출신의 관장은 대개 公奴婢의 신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經國大典』에서는 공노비가 도망하였을 경우 본 관청이 상급 관사에 보고하고 끝까지 흔적을 찾아내어 되돌리되, 현재 가있는 곳에서 생업에 안착되어 있는 자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補充文簿인 續案에 등록한다고 되어있다.¹⁰⁴⁾ 게다가 국가는 도망한 관장을 추쇄하여 다시 관청에서 복무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번이 아닌 기간을 틈타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도망한 이들이 도성 시전 근처에서 독립적인 수공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帳籍에 표시하고 稅를 걷는 것이 국가 재정운영에도 안정적인 해결방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양인 신분의 관장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된 천민 신분이 아니기에, 『經國大典』의 예를 따르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경우 공장세를 전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역 부담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국대전체제로 규정된 수공업 편제는 그 정비

103) 『孝宗實錄』卷12, 孝宗 5年 6月 3日 辛酉.

宣祖朝駙馬之家 皆給價 使私營之 不煩於國家云矣

104) 『經國大典』刑典 公奴婢條.

公賤有流亡者 本官卽報上司 移文諸道根尋發還 時到處安業者 仍留錄續案 京奴婢逃去外方者 論罪捉還

과정부터 계속해서 변동과 동요의 양상이 드러났다. 관장의 이탈이 바로 그 대표적인 현상이었으며, 여기에는 관장 직역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 위에 15세기 전반기부터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4. 私匠의 擴散과 그 樣相

관장의 이탈 현상이 사실상 15세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배경에 도성 상업과 민간 교환경제의 발달이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이탈한 官匠들의 활동 방향 역시 경제적 이익 추구로 향하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官匠이지만 私的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던 匠人, 또는 官에서 이탈하여 민간의 전업 기술인으로 전환한 匠人까지도 모두 私匠으로 統稱하고 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私匠이란 官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私工匠을 칭하는 표현이지만, 이들의 원형은 이미 15세기 관영수공업의 동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私匠’이라는 표현이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燕山君 8년(1502)의 일이다. 연산군은 약을 복용하기 위해 私匠을 내전에 들여 온 손가락을 제조하도록 하였는데, 신료들은 이를 두고 ‘왕의 유희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데에 私匠을 부르는 것은 폐단’이라며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연산군이 私匠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에서 私匠의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관청에게 (일을) 맡기면 지체되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며, 또 정성들여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위하여 장인을 내전에 두어서 지휘하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요, 장난의 도구를 삼자는 것은 아니다. 정승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私匠을 부역시키는 폐단을 말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어찌 公匠과 私匠을 구별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것은 정승들이 사장의 본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¹⁰⁵⁾

첫째, 私匠은 물품 제작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연산군은 담당 관청에게 일을 맡기면 이들이 일이 느려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정성들여

105) 『燕山君日記』 卷45, 燕山 8年 8月 4日 癸卯.

傳曰 欲服藥 速造銀匙以入 若付有司 則緩不及期 且不能精造 故爲此等事 置匠于內 以便指揮 非爲戲玩之具也 政丞未得詳知 故言役私匠之弊 若有不得已之事 則豈暇區別公私乎 是則政丞不無聽私匠本主之言也

만들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官匠 제작 방식의 단점을 언급한 것으로서, 私匠은 물품 제작의 기일을 잘 지키며 제작 기술 역시 관장보다 정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私匠은 公的 성격의 官匠과 對比되는 장인이었다. 政丞들이 私匠을 부리는 것을 ‘弊端’이라 말한 것은 민간에서 활동해야 할 공장을 궤에 불러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연산군이 부득이한 일이라면 어찌 公私를 구분하겠느냐고 한 것 역시 이들이 공적 체계와 거리가 있는 민간의 전업 수공업자였음을 반영한다.

셋째, 私匠에게는 ‘(本)主人’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연산군은 신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유가 私匠의 本主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장에게 주인이 있을만한 상황으로는 이들의 신분이 私賤이어서 본래의 주인이 있는 경우, 또는 市廛商人 등 상업 활동을 전담하는 고용주 아래에서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연산군이 고용주가 있는 私匠을 궤에 불러들임으로써 民營手工業에 차질을 빚었고, 여기에서 발생한 폐단이나 주인의 하소연을 근거로 신료들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료에 드러나는 개별적 내용일 뿐, 이와 같은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私匠의 성격이나 실체를 규명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燕山君日記』는 15세기 말~16세기 초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 私匠의 성격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官匠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영수공업이 유지되던 당시 사회에서 ‘私匠의 활동’과 ‘官匠의 私的 활동’은 사실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官匠은 직역 외 기간에는 독립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민간에서 활동할 때에는 私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私匠의 존재 시기는 관영수공업이 시작된 15세기까지 올려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私匠의 범주에는 ‘근무기간이 아닌 날 시전에서 私的 영리활동을 하던 官匠’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 중 私的 활동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관장은 점차 민간의 전업 수공업자, 私匠으로 변화해 갔을 것이다.

조선 전기의 私匠은 고려 말 민영수공업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고려 말 對外貿易의 발달과 舊都 開城市廛의 번성은 민영수공업자들에게 활발한 영업 활동을 가능케 하였으나, 정도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국가의 별도 관리나 통제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工·商人은 특권층의 상업 활동에 편승하거나 착취당하였고,¹⁰⁶⁾ 여기에 농민의 逃散과 逐末 현상까지 더해져 결국 고려의 재정기반이 붕괴되었다. 따라서 조선은 前朝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건국 초기부터 말업을 장악하고 재정기반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곧 조선 정부의 말업 통제는 여말선초 工·商業界의 발전상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진술하였듯 정부는 관영수공업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공장들을 대거 工匠案에 등록시키고, 官匠으로서의 國役과 工匠稅를 부과하며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集權體制를 지향하고 奴婢辨定이나 戶口 파악 등의 노력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고려의 모든 工匠을 장적에 등록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공장 중 일부가 누락되어 관영수공업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의도적으로 관장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공업품의 제작과 판매를 겸하여 상인으로 간주되고 공장안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등의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工匠案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관청에서 직역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장안에 올랐지만 생산 기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立役을 시키는 것보다 稅를 징수하는 것이 국가에서는 유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經國大典』에 ‘공장은 관청에서 일한 날을 제하여 계산하고 공장세를 납부하게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관청에서 일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관장에서 누락되거나 세의 부담만을 가진 소수의 공장들이 조선 건국 후에도 사장활동을 이어가고, 여기에 앞서 제시한 관장들의 私的 활동이 더해져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국초 末業의 정비를 전후하여서도 지속적으로

106) 朴平植, 앞의 책, 지식산업사, 1999.

활발했던 민간 상업의 모습 때문이다. 관영수공업은 『經國大典』에 명시될 때까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인원이나 관청의 변동이 계속되었기에 어느 시점에 확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공업품이 주로 거래되었을 상업시설의 발달을 근거로 유추할 수는 있다. 태종 5년(1405) 10월 漢陽 재천도 후 정부는 開城의 富商大賈를 비롯한 市塵商人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시전의 구성을 꺾하였다. 이후 태종 10년(1410) 2월에 시전 구성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도성 내에서 자유로운 상행위가 物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개경의 시전과 달리, 재천도 이후 한양에서는 몇 년간 雲從街에 남녀의 분별이 없고 商賈가 혼잡한 상태를 이루었다고 전한다.¹⁰⁷⁾ 시전의 주된 품목들은 거의 수공업품으로서, 일반 민인은 물론 왕실과 관료층에까지 필요한 衣·食·住 관련 물품들이었으며, 장인의 기술 수준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국초 도성의 시장은 민인들이 다양한 物種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몇몇 점포들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기술력을 발휘하여 최상급의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왕실의 수요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태종 11년(1411)에는 궁중 시녀들이 일하지 않고 국왕의 의복까지 시장에서 사다가 바치는 세태를 한탄하며 삼을 걷어 직접 궁중에서 길쌈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¹⁰⁸⁾ 여기에서도 당대 물품 제작 및 공급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다. 국왕의 의복은 최고급 원료와 기술력을 이용해 제작해야 하는 중요 물품이었는데 왕실의 예복을 담당하는 상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 내 혼잡한 시장에서 ‘皆買而供之’한 것이다. 이는 왕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품질의 물건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양으로 재천도한 이후 양반 관료들이나 부유층은 도성 내에서 私財를 들여 화려한 가옥을 지었다. 태종 9년(1409) 전 東北面 都巡問使 李之源은 便民事宜를 올려, 私家에서 흉년을

107) 註 4와 同.

自遷都以來 雜處雲從之街 男女無別 商賈混淆

108) 『太宗實錄』卷22, 太宗 11年 閏12月 2日 戊午.

今也下至宮中侍女 皆飽食無事 寡人衣服 皆買而供之 今後 定收斂麻枲之法 令宮中侍女任其紡績 以備內用

따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집을 짓고 있음을 비판하며 公私 瓦窯와 土木의 役事를 풍년이 들 때까지 금할 것을 청하였다.¹⁰⁹⁾ 이 시기에 천도한 이들이 주택 건축에 필요한 기와를 공급받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私窯 즉 민간 와요가 盛業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모두 시전이 설비되기 이전이거나 행랑공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상황 즈음의 것이므로, 국초부터 공장들이 사적 영리 활동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고급 기술력을 가진 장인들이 관영수공업 체제에 결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私匠은 비번 기간에 私的 활동을 하던 관장, 국초 공장안에서 누락된 공장, 공장안에 등록은 되었으나 公役을 맡지 않은 공장까지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경제 활동은 다음의 몇 가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종의 楮貨 流通政策에서 장인층은 저화를 유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로 여겨졌다. 태종 11년(1411) 의정부는 富商大賈와 여러 장인들이 국법을 업신여겨 몰래 米·布로 사사로이 무역하고, 저화를 쓰지 않아 법이 점점 해이해진다며 이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였다.¹¹⁰⁾ 국가는 工商人에게 매매행위에 저화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공장세를 저화로 징수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저화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공장들과 부상대고의 연계사실은 물론이고 이들의 상업 활동이 화폐유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심지어 저화유통이 잘 되지 않자 공장들이 저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司憲府 吏卒들을 微服차림으로 공장들의 집에 보내어 저화를 쓰게 하고, 공장들이 저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경우 拘束·訊問하는 방법을 쓰려고 할 정도였다.¹¹¹⁾ 또한 이 자료를 통해 당시 공장들이 시전 뿐 아니라 자신의 집도 사업장 겸 판매장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9) 『太宗實錄』 卷18, 太宗 9年 7月 12日 壬午.
 況於私家 不計年凶 競爲華麗 起怨傷和……公私瓦窯土木之役 乞限豐年一禁
 110)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1月 12日 癸酉.
 富商大賈諸匠人 輕慢國法 潛以米布 私相貿易 不用楮貨 邦典陵夷
 111) 註 110과 同.
 司憲府乃令吏卒以微服 將楮貨往工匠家以覘之 如有不肯者 拘執以訊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세종 29년(1447)의 기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눈여겨 볼 수 있다. 女眞에게 하사할 물품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市人들에게서 助役이라는 명목으로 물품을 빼앗다시피 거두었다.¹¹²⁾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사여할 물품이 부족할 때, 都城市廛의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였을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물품들이 매매되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私的活動 중인 관장이 시전 내에서 물건을 제작·판매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민간 工匠들의 기술력은 이미 조정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국가 사정상 특정 물품의 경우 시전의 물품으로 대체하는 일도 있었다. 世祖朝에는 군기의 일종인 군사의 갑옷을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갖추게 하는 방식이 건의되었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¹¹³⁾ 세조 6년(1460) 吏曹判書 具致寬은 국가에서 주는 갑옷[公甲]을 군사들이 소중히 간수하지 않아 훼손이 심하므로,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갑옷[私甲]을 준비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이를 윤허하여 이후 군사들이 직접 갑옷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농민들은 갑옷을 사기 위하여 農牛를 파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에 앞서 이 같은 논의와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갑옷 제작의 기술을 갖춘 장인이 시전에서도 활동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백성들이 구입할 수 있는 상업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역시도 갑옷을 제작하는 官匠이 시전에서 私的 활동 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중요 물품을 외부의 공장에게 부담시킨 기록들을 찾아보면, 세조 13년(1467) 明 使臣의 물품을 주문 제작한 사례가 있다. 명의 사신 任興과 黃哲이 각각 鑷鏡과 佩刀를 청하자 세조는 공장을 불러 전담케 하면서, 사신에게 도감에서 공장을 ‘사서’ 만들어주는 것으로 답변하도록 하였다.¹¹⁴⁾ 중국의 사신에게 만들어주는 물품이니만큼 품질에

112) 註 66과 同.

113) 『世祖實錄』卷20, 世祖 6年 4月 13日 己未.

致寬啓 今軍士皆着公甲 故不謹看守 未久而破 若令自備 則不勞國家而甲完固矣

114) 『世祖實錄』卷44, 世祖 13年 10月 4日 丙申.

任興請鑷鏡 黃哲請佩刀 命皆造給 傳曰……擅招工匠則自專 當答以都監購匠造給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관장에게 대가 없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도감에서 공장을 ‘사서’ 만들어준 것이다. 이는 곧 물건을 제작하고 그 값을 치렀다는 뜻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복무중인 관장을 불러 일을 시키고 별도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번 기간이 아니지만 우수한 실력을 가진 관장을 불러 대가를 주고 물건을 제작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또는 민영수공업자로서 우수한 私匠을 초빙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私匠 확산의 또 다른 사례는 성종 대의 기록이다. 성종 23년(1492) 군기시에 필요한 錯箭 2만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종이 造箭匠을 쓰려 하자, 同知使李克墩과 特進官 金升卿이 반대한 일이 있다. 이극돈의 반대 이유는 조전장의 월 급료가 거의 100石에 이를 만큼 비싸다는 점과, 착전 20,000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년인데 1년에 1,200石에 달하는 급료 등 허비함이 많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승경은 조전장이 모두 저자의 사람이므로 생업을 폐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¹¹⁵⁾ 이 사료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급료에 대한 부분이다. 관장의 경우 체아직으로 공장들 사이에 돌아가며 녹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급료 지급은 다른 의미였다. 직역 외의 일을 하거나 작업의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관장에게도 급료를 지급하였는데, 모든 장인이 급료를 받는 것은 아니었으며 점차 그 대상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군기시는 직역이 고되어 관장의 이탈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관청이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언급된 조전장인이 ‘비싼 급료를 주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점은, 이들의 기술력이 매우 뛰어났거나 또는 이들이 일을 의뢰받은 외부인이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또 하나는 ‘造箭匠皆市人’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이들이 시전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부 공장들, 즉 私匠이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종이 군기시에 부르려 한 조전장인은 비번 기간 중에 私的 활동을 하고 있던 관장이었거나, 또는 명칭만 私匠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연산군 대 이후의 私匠과 같

115) 『成宗實錄』 卷261, 成宗 23年 1月 22日 癸巳.

克墩又啓 命軍器寺別造錯箭二萬部 其造箭匠人一朔之料 幾至百石 計四年乃得畢造 則其料至一千二百石 虛費實多……特進官金升卿曰 造箭匠皆市人 以此廢其生業 是亦可悶

은 전형적인 형태의 민영수공업자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도성 상업의 발달과 함께 私匠들의 활동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국가에서 공장들을 대상으로 내린 각종 法이나 禁令의 존재이다. 특정한 사항에 대한 금지령과 위반할 경우에 받을 처벌까지 제정하는 것은 곧 당시 사회에 금령을 제정해야 할 만한 현상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국초부터 수공업과 상업 부문에는 다양한 금령들이 내려졌다. 이 당시 내려진 금령들은 주로 특정 물품의 제작이나 公私간 제작과 판매, 특히 사사로운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그 품목은 시기와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 예로, 세종 5년(1423)에는 기와를 제작·판매하는 私窯에서 국가의 규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와를 생산할 경우, 기와를 官沒한다는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¹¹⁶⁾ 이러한 금령은 기와의 수요가 늘어 수요가 활발히 영업하게 되자 이용계층에 맞추어 기와의 품질이나 형태를 각각 달리하거나 가격을 다르게 받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 8년에는 동전을 주조할 동의 부족을 이유로, 銅과 鐵을 이용한 器皿의 제작이나 사적인 물품 거래를 철저히 금지하였다. 특히 과거에 주조한 기명까지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을 嚴禁하고, 어길 경우 처벌 사항까지 마련하였다.¹¹⁷⁾ 이는 銅錢 사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이 밖에 도성 내 사치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부녀자의 畫金笠子, 帽羅로 만든 갓, 膠草로 만든 갓 등에 대해 때때로 제작·판매를 규제하기도 하였고,¹¹⁸⁾ 白磁器 등에 대한 사용이나 사적인 제조와 판매를 금하기도 하였다.¹¹⁹⁾ 이와 같은 기록들은 모두 국초인 태종·

116) 『世祖實錄』卷17, 世祖 5年 8月 5日 甲寅.

私窯燔瓦 造作不如法者 本府及漢城府檢察論罪 其瓦沒官

117) 『世宗實錄』卷34, 世宗 8年 12月 6日 乙丑.

鑄錢銅不足 請自今公私新造器皿一禁 違者 杖一百……舊鑄器皿 私相貿易者一禁 違者論罪 所賣器皿屬公

118) 『世宗實錄』卷3, 世宗 1年 1月 28日 癸酉.

司憲府啓 請令前所造婦女畫金笠子 着小印子 以憑檢考……自今若有新造者 其笠主及工匠 竝以制書有違論

『成宗實錄』卷28, 成宗 4年 3月 3日 癸巳.

近來民風士習 日益奢僭 庶人無賴之徒 冒着毛羅 笠亦有膠草爲笠……并鞫工匠 自今用毛羅及膠草爲笠者 請依律痛懲

세종대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15세기 전반부터 민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私營 제작 활동과 상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官匠은 私的 활동의 비중과 반경을 다양한 분야로 넓혀갔고, 때로는 외부 私匠이 국가의 수요품 제작을 맡기도 하였다. 이 배경은 관장의 이탈과 마찬가지로 도성 상업의 발달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국초 적잖이 등장하고 있는 代納 관련 기록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하다. ‘任土作貢’, ‘本色直納’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공납제의 운영 과정에서 대납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대납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은 도성시전 상품의 우수성이었다. 代納·防納은 고려 후기 상업과 유통 체계가 발달하여간 속에서 현물을 수납하는 공물제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¹²⁰⁾

국초 代納은 정부가 嚴禁하여 잠시 사그라지는 듯하였으나, 太宗朝와 世宗朝를 거치며 다시 성행하였다. 各道の 監司나 都節制使 등 지방관은 매년 진상하는 물품을 값을 많이 준비하여 서울에서 무역하거나, 경공장을 청하여 많은 값을 주고 만들어서 진상하였다.¹²¹⁾ 또한 공물의 대납을 장인들과 연계하고 있는 商賈들이 직접 피하는 등 이미 도성의 장인이 제작한 물품은 빈번히 공물로서 거래되었다. 문제가 될 때마다 국왕은 물품의 精麤를 논하지 말 것이며, 사서 바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직접 제조하여 바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¹²²⁾ 그러나 화살 하나를 만

119) 『世祖實錄』卷39, 世祖 12年 6月 7日 丙午.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120) 任明姬, 「高麗後期の 貢物代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저자는 고려시기의 代納이 貢物制 운영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다가 후기에 접어들며 점차 관행화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고려 후기 대납 확산의 배경을 京市의 성장으로 보았는데, 京市가 성장한 요인 중 하나로 手工業者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고려 후기 무신이자 崔忠獻의 동생인 忠粹가 왕실과의 혼인을 위해 다수의 수공업자를 단기간 동원하였다는 기록(『高麗史節要』卷13, 明宗 27年 10月, 363~364쪽)이 있을 만큼 당시 개경에서 많은 수공업자가 거주하며 활동하였다.

121) 『世宗實錄』卷79, 世宗 19年 10月 19日 乙亥.

近聞各道監司都節制使……進上之物 或多備其直 貿易于京 或請京中工匠 多給其價 製造進上

122) 註 121과 同.

今後各道方物 不論精麤 令本道工匠製造進上 永爲恒式

드는 데에도 공인 5~6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의 고을 같은 곳은 전문 공장들도 없는 실정이라 공물을 제작하는 데에는 늘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민간에서 배를 거두어 서울로 가서 값을 주고 만들어 바치는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¹²³⁾

私匠의 활동이 확산된 또 다른 배경은 15세기 중반 이후 국가에서 私匠 및 시전의 물품을 점차 선호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미 15세기 전반부터 국가는 관장이 이탈하여 물품을 제때 만들지 못할 때에 시전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점차 관장 활동의 비효율성, 관장 제작 물품의 품질 저하, 관장 이탈 후 관장 집단의 구성원 변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자 앞서 본 사례들과 같이 民弊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중요 물품은 私匠을 초빙하여 제작을 맡기거나 또는 시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다.

15세기 중반부터 관장 활동은 인원수에 비해 지나친 분업화가 이루어져 민간의 제품보다 비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세종 30년(1448), 世子가 左議政 河演·右議政 皇甫仁 등 여러 신료들과 논의한 내용 중에는 각사의 노비들이 工匠으로 지나치게 投屬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鞍工을 한 예로 들며, 私家에서는 한 사람이 제작할 일을 10여인이 각각 다른 소임을 맡아하는 것을 문제로 들었는데¹²⁴⁾, 이는 과도한 공장 배정과 분업 생산에 대한 비판이었다. 분업은 공업 기술의 발달과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이 시기에는 국가의 수요품 종류가 방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과 비용, 작업 공정에 드는 시간 등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종은各司 工匠을 조사하여 쇄신하고 공장으로서의 기술이 없는 이들은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21日 壬辰.

前此令製雜物 或不製造收價上來 貿易而納者有之 至於此事 若或憚於織造 收價民間來京買納 則非 惟生弊多端抑 亦有違國家立法之意

123) 『成宗實錄』卷273, 成宗 24年 1月 3日 己巳.

造一箭 用工人至五六人 如外邑無工匠難造 必收布民間 借造於京納之 其弊不貲

124) 『世宗實錄』卷120, 世宗 30年 5月 12日 丙申.

各司工匠 稱爲傳習 濫相投屬 且以鞍工一事言之 私家一人所作之事 十餘人爲之 各異其任

무엇보다 私匠의 제작물품이 점차 관장의 것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데에는 관영수공업 제도가 가진 기본적인 한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관장 활동의 非營利性이었다. 관장은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의 직역을 부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물품을 대가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생산하여야 했다. 제조한 물품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대우가 따르는 것도 아니었기에, 생산자에게 경제적 대가가 없는 관장 활동은 적극적인 의욕과 동기가 발휘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관장이 복무를 마친 후 자기 經理를 하는 작업장으로 돌아가면 이들의 생산 활동은 달라졌을 것이다. 관장의 私的 활동은 직접적인 생계 및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었으므로, 이들은 다른 장인 및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근무태도의 차이는 곧 官匠과 私匠의 제작 물품 간 質的 차이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장 집단은 더 이상 국초와 같이 최고 기술자를 모아놓은 집단이 아니었다. 사적 활동과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한 관장들은 관장 집단에 代役을 집어넣었으며, 여기에各司의 公賤 또는 私賤들이 자신의 신역을 피하기 위해 공장으로 투탁하기도 하였다. 中宗 38년(1543) 사헌부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각사 노비들이 전업으로 삼는 기술이 없음에도 청탁을 하고 거짓으로 꾸며 공장이 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匠人과 樂工 중 기능이 없는 자를 가려서 모두 본사에 환속시킬 것을 청하였다.¹²⁵⁾

이와 같은 이유들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수요품 제작에서도 점차 私匠을 선호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私匠은 관장 활동과 병행하다가 점차 체제에서 이탈하여 시전 상업에 전업으로 종사하게 되거나, 국초부터 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들의 실제 영업 활동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었을 것으로 예상된

125) 『中宗實錄』卷100, 中宗 38年 6月 2日 乙亥.

而公賤雖素無業技 或能請囑 則托以成才 冒妄啓下……匠人樂工未成材者 竝一切抄啓 還屬本司

이는 당대 관장 집단의 구성이 어떠하였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16세기 중종조의 사료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관장의 이탈이 시작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을 것이다.

다. 私匠이 도성시전에서 활동한 형태의 경우를 상정해보고 당시 私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나 사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째, 시전 상인 또는 부상대고 등 상업 자본과 연계하여 활동하던 형태의 私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술력이나 제작 물품의 수요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계의 형태는 자본이 없을 경우 상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물건을 제작·납품하는 이른바 先貸制와 유사한 형식, 또는 기술력이 우수한 인기 공장 또는 소정의 자기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으리라고 본다.

둘째, 자신의 자본으로 온전히 제작과 판매를 겸하는 형태로서 독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私匠이다. 이 경우의 공장들은 시전에 점포를 개설하여 자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점포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을 작업장 겸 판매장으로 삼아 활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업과 상업이 결합되므로 상인으로 간주되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물품의 판매가 번성하여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家門이나 血緣 집단으로서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영세규모로 활동하던 수공업자 겸 상인이다. 두 번째의 경우와 다른 점은 기술력이 낮아 민간에 소용될 수 있는 정도의 소소한 물품들을 만들고,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팔거나 노상 또는 시전 외곽에서 소규모의 점포를 운영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기술 수준이 낮거나 상업 활동의 규모가 작아 장적에 등재되지는 않고 농민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외공장의 경우와 같이 생업의 보조 수단으로 농업과 수공업을 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세 경우 중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해간 私匠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형태였을 것이다. 농업과 兼業 혹은 副業으로 수공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전업으로 매진하던 이들에게 밀려 경쟁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만한 사항으로는 私匠으로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致富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신분적 질서에서 오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는 점이다. 私匠은 때로 권력층에 결탁하기도 하고,

그들의 사사롭고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는 등 다양한 입장에 처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私匠의 활동 형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에 부합되는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는 사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15세기에 활동하였을 私匠의 모습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15세기의 사료가 가장 적절하겠으나, 현실적인 사료의 부족 문제 그리고 조선 전기와 후기 역사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6세기 이후의 자료도 함께 인용하여 私匠의 모습을 유추하고자 한다. 또한 舊都로서 조선조에도 활발한 상업을 영위했던 개성시전의 자료를 통해서도 도성시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들어볼 사례는 성종 대에 市塵에서 鐵物塵을 운영하던 劉氏 家門이다. 이들의 존재가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성종 16년(1485)에 발생했던 언문 투서 사건과 관련이 있다. 戶曹判書와 參判을 헐뜯는 내용의 익명의 언문 투서가 발생한 사건으로 시전의 再編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일으킨 이른바 官·商 간의 갈등이 드러난 사건이었다.¹²⁶⁾ 이 사건으로 당시 시전의 상인들이 대거 투옥되고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의 주모자는 철물전 상인이었던 劉從生으로 밝혀져 그는 가족과 함께 平安道 극변으로 옮겨가는 全家徙邊의 형을 받았다.¹²⁷⁾ 이 과정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하거나 함께 조사를 받았던 이들로서 그의 父 劉莫同, 형제 관계인 劉莫知, 子 劉潤同이 있다. 이들은 모두 ‘市中巨富’로 표현되었으며, 시전에서 각자 철물전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⁸⁾

유종생이 전가사변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부친과 형제는 시전에서 철물전을 운영하였다. 사건 이후 유종생의 형제 유막지가 관료에게 뇌물을

126) 朴平植, 「成宗朝의 市塵整備와 官·商 葛藤」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研究』, 2009.
『成宗實錄』 卷181, 成宗 16年 7月 17日 乙丑.
德良仍啓曰 此書有人潛投于臣之同生家……請令攸司推鞠投書者……鐵物前縣紬前人最惡移市 當先 鞠兩前出市人

127) 『成宗實錄』 卷189, 成宗 17年 3月 19日 甲子.
傳于義禁府曰 劉從生罪重 予欲殺之 左右皆曰不可殺 予亦豈好殺乎 其減死 平安道極邊全家徙居

128) 『成宗實錄』 卷185, 成宗 16年 11月 14日 辛酉.
此輩皆市中鉅富……從生之父莫同以鉅富

주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친 유막동이 아들의 사면을 위해 국가에 쌀 200石을 바치는 등¹²⁹⁾ 철물전 유씨 일가는 계속해서 재력을 유지하였고 권력과의 결탁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씨 일가가 운영한 철물전의 경영형태와 관련하여, 이들이 수공업에 겸하였는가의 여부는 사료를 통해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수공업을 겸하지 않았다면 유씨 가문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의 私匠으로부터 물품만을 받아 판매한 단순한 富商大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수공업과 상업을 겸하는 이들이었다면, 두 번째 유형의 私匠일 것이다. 철물 제작은 원료공급과 제작공정·제작환경 면에서 개인이 단독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였고, 가마[爐]를 중심으로 여러 장인들의 분업적 협업이 이루어졌다.¹³⁰⁾ 따라서 시전에 개점한 철물전이라면 일정 규모의 인원을 갖추어 전문적으로 철물을 제작하고, 이를 家業으로 삼아 血緣關係를 가진 匠人들이 함께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문 역시 철물 제작 기술을 가진 혈연관계의 장인집단이 직접 물품을 제작하고 이를 市廛에서 판매하여 巨富가 된 경우로 보인다.

私匠의 두 번째 사례는 개성시전에서 鑰器를 만들어 팔던 韓舜繼라는 인물이다.¹³¹⁾ 그는 宣祖朝의 인물로 서반 계통 양반의 후손이지만 가세가 빈궁해지자 鑰器 제조와 판매에 종사하며 모친을 봉양하였다.¹³²⁾ 그

129) 『成宗實錄』卷254, 成宗 22年 6月 26日 辛未.

前日劉莫同請納粟三百碩而贖其子從生

130) 장경희, 「조선시대 철물 제작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7, 2014.

철물 제작에는 쇠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鍛造와 鑄造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冶匠, 注匠, 鑄匠으로 나뉘었다. 또한 鑄匠은 화폐, 활자, 가마솥, 그릇, 무기 등 만드는 물품에 따라 장인을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였다. 世宗朝에 상의원과 공조에서 화살촉을 만들 때에도 冶匠, 銅匠, 箭鏃匠, 鍊正匠 등이 분업하였다고 전한다.(『世宗實錄』卷64, 世宗 16年 6月 11日 丙辰.)

131) 朴平植, 앞의 책, 1999, 203~205쪽.

저자는 韓舜繼를 개성 상공업의 발전상과 관련하여 양반 유자 계층이 상업에 참여한 사례로서 들고 있다.

132) 한순계는 祖父와 父親이 각각 效力副尉와 果毅校尉를 지낸 서반계통의 후손이었다. 본래 交河 출신이지만 개성으로 徙居하였다고 전해진다.

『市隱集』卷2, 行狀.

家甚貧窮業冶鑄 事母以孝定省告面

『市隱集』卷2, 墓碣銘.

宣祖時人始籍交河中世徙居松都 果毅校尉萬齡其父也 效力副尉義貞其祖也

는 낮에는 유기를 만들어 開市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 儒者였다.¹³³⁾ 한순계가 만든 유기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다른 판매자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우수하였으나,¹³⁴⁾ 그는 적극적으로 利를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工商으로 생업을 삼고도 利를 다투기보다 재산을 친족에게 분여하였고,¹³⁵⁾ 栗谷 李珣와 牛溪 成渾으로부터 ‘市隱’이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¹³⁶⁾

양반출신이지만 수공업에 종사하여 생업을 삼았던 한순계 역시 私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직접 개시하였다는 표현에서 私匠의 두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재부를 늘리는데 집중하지 않았던 그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영세한 규모의 私匠인 세 번째 유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제품의 품질이 우수했다는 점에서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私匠의 예시로는 염색장인인 染家를 들 수 있다. 염가란 직물에 물들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집을 의미하는 말로서 염색장인이 운영하던 점포, 또는 염색장인 집단 등의 정체로 생각된다. 『世宗實錄』에서 마필 공물의 수효를 工·商·染家에 배정하도록 청한 내용에서 15세기 염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¹³⁷⁾ 관영수공업 제도 아래 각 관청마다 염색 장인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공물을 배정한 것으로 보아 민간에도 염가가 존재하여 사적으로 염색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작업장으로 삼아 공업 활동을 하던 私匠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청 소속 염색 장인이 직역기간 후

133) 한순계는 소년시절 徐敬德에게 함께 강학하기를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노모를 봉양해야 함을 이유로 사양하고, 밤마다 책을 읽고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市隱集』卷2, 傳.

花潭徐先生欲與入山講學 舜溪辭以親老未遑也 然夜必懸燈於爐側 間讀古書作詩語甚奇偉

134) 『牛溪集』卷6, 雜著, 雜記(『韓國文集叢刊』43冊)

勤儉不怠 器皆完善 而不貳價 是故 售者爭就之 輒辭以分與他工曰 吾何得專利爲哉

135) 註 132와 同, 行狀.

其餘資常均於族人……每於販器之時 不欲與人爭利 只取養母之資不治生業

136) 註 132와 同, 行狀.

蘇齋栗谷牛溪三先生亦常來見 而號之曰市隱先生

137) 『世宗實錄』卷127, 世宗 32年 1月 13日 己丑.

에 집에 돌아와 염가로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 후기에 ‘染契’라는 貢契가 신설되고 그 안에서 직급이 나누어져 시전에서 염색활동 및 염색직물을 판매하는 분업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들 염계의 원형이 염가일 것으로 보인다.

염색수공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染母’이다. 『太宗實錄』에서 확인되는 染母는 내섬시에 소속되어 있던 여성 염색장인으로 이들을 시켜 물감의 재료를 구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¹³⁸⁾ 염모는 점차 사적 활동의 비중을 늘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中宗實錄』에서 중국 사신에게 접대할 물품의 염색을 ‘私染母’에게 맡긴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¹³⁹⁾ 李文樞의 『默齋日記』에서는 염모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여 염모가 민간의 염색업자로서 이문건의 집에 드나들며 염색을 해주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⁴⁰⁾ 이렇듯 염모는 조선 전기에 官匠의 처지였으나 16세기 이후에는 민간에서의 염색 활동을 겸한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염모는 명확하게 官匠과 私匠으로 구분되지 않는 존재, 즉 官匠으로서 私的 활동을 펼치고 있던 전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15세기의 私匠은 그 범주가 넓어 일부는 관영수공업이 정비되기 전인 조선 초부터 존재하였으며, 관영수공업 제도의 편제 이후에는 관장의 사적활동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혀간 이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織物手工業과 磁器手工業, 金屬活字의 製作 등 수준 높은 수공업 기술이 이미 고려 시대부터 갖추어져있었으며, 고려 말 번성한 시전 상업 속에서 민영수공업 활동은 왕성하였다. 그리고 이는 조선의 건국 이후 민간 경제

138) 『太宗實錄』卷31, 太宗 16年 3月 10日 壬寅.
每當入染之時 令染母求諸市裏

139) 『中宗實錄』卷83, 中宗 31年 12月 9日 庚寅.
今者該司所儲靑染絕乏, 頭目所給衣服, 至分付私染母染之云

140) 『默齋日記』上, 6冊, 嘉靖 33年 2月 26日(한국사료총서 제41집).
染母來遺黃味
『默齋日記』上, 6冊, 嘉靖 34年 3月 3日(한국사료총서 제41집).
有染母來言雜談 厭甚還堂
『默齋日記』下, 9冊, 嘉靖 40年 5月 16日(한국사료총서 제41집).
久臥以眠 因染母之來
『默齋日記』下, 10冊, 嘉靖 44年 7月 18日(한국사료총서 제41집).
病染母送茄子升

에서의 수공업활동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을 私匠과 사적활동을 하던 官匠은 물건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경쟁자였고, 동시에 15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시기 수공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간 양 축이었다.

관장의 사적 활동 증대, 관장의 이탈 등 私匠으로서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조선의 관영수공업은 국가 및 왕실 수요품의 상당 부분을 私匠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갔다. 그러나 국가적 중요성을 띠는 물품은 여전히 관영체제를 유지하여 갔는데 軍需品, 儀禮에 쓰이는 祭器, 건축 자재인 기와, 왕실 수요품은 각종 비단 등은 여전히 국가에서 官匠을 통하여 생산하였다.¹⁴¹⁾ 또한 민간에 생산을 맡길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매하거나, 국가적 규준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私窯의 경우 물품의 규격을 맞추게 하였고, 甲衣·弓矢·火砲·火車 등 군수품의 경우 중앙에서 만들어 보내거나 경공장을 각지에 파견하며 물품 규격의 전국적인 통일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공업 편제의 변동 상황 속에서도 集權國家로서의 성격을 견지하고자 하였던 조선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41) 『光海君日記[正草本]』卷113, 光海 9年 3月 19日 甲申.
傳曰 各衙門以草家造成 則恐或有火災可慮 常瓦多數燔造
『仁祖實錄』卷49, 仁祖 26年 7月 11日 甲戌.
自點以本院織錦 不及中國 遣織工往北京 學得織造之法 自是 錦段華美 上悅之
『孝宗實錄』卷11, 孝宗 4年 閏7月 12日 乙巳.
禮曹請令鑄成廳 新造山川祭器及親祭時祭器 從之
『英祖實錄』卷26, 英祖 6年 5月 6日 癸酉.
命守禦廳 造平銃九百柄 長銃一百柄 以南漢山城軍器不足也

5. 結語

조선은 건국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러 部面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체제를 정비해나갔다. 경제 영역에서는 麗末의 폐단을 방지하고 농민의 안정을 위하여 유교적 직업·신분관에 따른 四民을 설정하고 務本抑末의 틀 아래 각종 정책을 세우며 정돈하여갔다. 수공업 정책 역시 그 일환으로서, 국가가 전업 기술자인 工匠을 工匠案에 등록하고 직역을 부담시키는 官營手工業 制度로 그 형태를 갖추었다. 국가는 관장을 수공업의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동원하고자 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농민의 逐末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의 官匠은 천민과 양인 신분의 수공업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려 말 寺院 출신 수공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관공장의 규모는 『經國大典』에 근거하였을 때 경공장 2,795명, 외공장 3,764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각자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도성 수축과 관련한 役事, 군기 제작, 서적 간행, 국가·왕실 수요품 제작 등 국가의 체계와 기반을 갖추는 여러 사업에 官匠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番을 정하여 교대로 복무하였으며, 1년 중 公役日에 해당하는 일정기간만 관청에서 물품을 제작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工匠稅를 부담하며 자유롭게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다. 국가가 관장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私的 營利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장기 근속하거나 고급기술을 가진 일부 장인에게는 遞兒職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 관장의 규모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수치였다.

조선은 이와 같이 官營手工業 制度를 정비하여 국가의 통제 아래 수공업 정책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에서 이 정책은 국초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수공업 제도가 거의 정비된 世宗朝부터 관장 이탈, 후임 공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관장의 이탈 현상은 그 배경에 役의 불평등한 부담과 직역의 고층에서 비롯된 생계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15세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서 비롯된 도성 상업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수조권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양

반관료층은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상업 활동, 代納·防納에의 참여를 통한 식화행위에 주력하였다. 여기에 對中國 무역의 영향으로 사치풍조와 민인들의 축말 현상이 확산되어가면서 도성의 상업 시설 역시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수공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도성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官匠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거나 재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점차 私的 활동의 비중을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이들이 바로 私匠이다. 私匠은 지금까지 官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조선의 관영수공업이 番次制로 운영되어 官匠에게 私的 활동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개념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私匠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장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 범주 안에는 관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 공장 외에도, ‘비번기간에 私的 활동을 병행하던 官匠’을 조선 후기 私匠의 原形으로서 들 수 있겠으며, 麗末鮮初 ‘관영수공업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각종 장인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장은 16세기 이후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장이라기보다, 15세기에도 존재하였으며 당시에는 官匠으로서 私的 활동을 겸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장은 도성 상업의 발달 속에서 사적 활동의 비중을 늘려갔고 이들 중 제도에서 이탈하여 전면적인 사장이 되는 이들도 있었다. 이후 전업으로 사적 활동에 뛰어드는 공장들이 증가하면서 사장은 독립적 수공업자로 그 특성을 굳혀갔다.

관영수공업이 왕실과 국가의 수요품만을 감당하던 15세기 조선의 상황에서, 관장의 사적 활동은 민간 상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관영수공업 체제의 동요 상황에서는 사장으로서 국가 수요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가 관장의 이탈로 물품 조달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방안이자, 동시에 사장이 제작한 물품을 선호하였기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관장 활동의 비영리성에 따른 제품의 질 저하, 관장 집단 구성원의 기술력 저하, 관장 체제의 과도한 분업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부각되며 관장 생산 제품은 국가 수요품 조달에서도 사장 생산 제품에 비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기 때문이다.

私匠의 활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市廛商人이나 富商大賈 등 상업 자본과 연계하여 활동하던 장인이다. 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본 소유 여하에 따라 상인과의 동업 또는 피고용인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둘째, 자기 자본으로 제작과 판매를 겸하며 독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인으로, 이들은 工·商業을 겸하므로 사업이 번성할 경우 家門이나 血緣 집단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점포를 운영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세규모로 활동하던 수공업자 겸 상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술 수준이 낮아 노상이나 시전 외곽에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농업과 겸하는 영세업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私匠은 교환경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역으로 이들의 성장은 상업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官匠의 이탈과 私匠의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는 수요품을 시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 방식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동시에 무기 제작과 같은 국가의 핵심 물자 생산은 공장 推刷와 贖還, 傳習生 모집 등을 통해 관영수공업 체제를 유지하고, 관장을 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작업에서 그간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있던 15세기 조선의 수공업 체제를 당대 사회 경제의 변동이라는 틀에서 점검하고, 官匠과 私匠이 상호 보완적 존재로서 수공업계의 변화를 이끌어간 사정을 정리해보았다. 또한 16세기 이후의 독립적 장인으로 인식되어온 私匠의 外延을 확대하여 官匠의 私的 活動에 적용함으로써 15세기 민간 경제에서의 수공업자의 활동과 상품 조달에 주목하고, 이를 통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 수공업사 이해의 간극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나아가 관장 역시 사적 활동으로 민간 교환경제에 기여하였으며, 이들이 조선 후기 私匠의 原形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私匠에 대한 이해 체계를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리에서 조선이 건국 후 집권국가로서 지향한 경제 정책이 수공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실체와 성격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는 말업에서 특히 국가가 전담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抑末’의 방침으로 경제 정책을 정비하였고 수공업 역시 관공장체제로서

국가가 직접 管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현실에서 수공업 정책의 운영은 당대 土地制度·賦稅體系의 變動과 맞물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官匠의 離脫과 私匠 擴散으로 이어지는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수요품의 조달을 사장에게 맡겨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기 제조, 최고급 왕실 수요품 제작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만은 관장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는 국가의 末業 통제 아래에서도 민간 교환경제가 발달하던 현실에 조응하여 국가가 정책 운용의 범위를 스스로 재조정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집권국가로서 사회의 변화상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參 考 文 獻

1. 資 料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朝鮮經國典』,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默齋日記』, 『眉巖日記』, 『牛溪集』, 『市隱集』, 『里鄉見聞錄』
『世宗實錄地理志』

2. 論 著

1) 單行本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_____,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984.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_____,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3.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2000.
박남수,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2009.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2011.
朴平植, 『朝鮮前期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1999.
_____, 『朝鮮前期 交換經濟와 商人 研究』, 지식산업사, 2009.
변광석, 『조선 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혜안, 2005.
오영교 편,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2004.
유승주, 『조선시대 광업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 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研究』 [Ⅱ], 지식산업사, 1998.
 _____, 『(增補版)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부, 2012.
-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학연구소, 1994.
-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 · 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_____,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 ; 지양사, 1989.

2) 論 文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 - 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52, 2013.
- 김건태, 「16세기 양반지주층의 경제활동」 『역사와 현실』 16, 1995.
- 김경란, 「조선 후기 良役政策의 전개와 匠人과약의 변화」 『韓國史學報』 29, 2007.
- 金東哲,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1985.
 _____, 「수공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선경, 「朝鮮前期의 山林制度-조선국가의 山林政策과 인민지배」 『國史館論叢』 56, 1994.
- 김순영, 「조선시대의 염료 수급 체계와 염색 수공업자 유형」 『한국의류학회지』 38, 2014.
- 金信雄, 「朝鮮時代の 手工業 研究 - 京工匠 · 外工匠의 分解와 企業的 手工業의 擡頭」,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4.
 _____, 「手工業의 種類와 構造分析-朝鮮前期를 中心으로-」 『經濟學論究』 6, 1983.
- 金素銀, 「16세기 兩班士族의 수입과 경제생활-『默齋日記』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15, 2002.

- 박경자, 「朝鮮 15世紀 磁器所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70, 2011.
- 朴平植, 「高麗後期の 開京商業」 『國史館論叢』 98, 2002.
- 徐聖鎬, 「高麗 武臣執權期 商工業의 전개」 『國史館論叢』 37, 1992.
- _____,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 1999.
- 서수민, 「高麗末·朝鮮初期 陶瓷手工業 研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송성안, 「高麗後期 寺院手工業의 工匠과 手工業場」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韓國中世史學會, 2001.
- 申幼兒, 「朝鮮前期 遞兒職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朝鮮前期 遞兒職 運營의 實際」 『韓國史研究』 171, 2015.
- 위은숙, 「원간섭기 對外貿易-『老乞大』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7.
- 유승주, 「朝鮮前期 軍需工業에 관한 一研究-壬亂 中の 武器製造實態를 中心으로-」 『史學研究』 32, 1981.
- 이병희, 「조선 전기 도자기 수공업의 편제와 운영」 『역사와 현실』 33, 1999.
- 李相瑄, 「高麗寺院經濟에 대한 考察」 『崇實史學』 1, 1983.
- 李成妊, 「16세기 李文樾家の 收入과 經濟生活」 『國史館論叢』 97, 2001.
- 이혜옥, 「조선 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1999.
- 장경희, 「朝鮮·淸 간의 帽子貿易과 製作實態 연구」 『史叢』 62, 2006.
- _____, 「조선시대 철물 제작 장인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7, 2014.
- 全暎俊, 「麗末鮮初 國家 土木工事와 供役僧」 『東國史學』 40, 2004.
- _____,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 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2011.
- 鄭治泳, 「高麗~朝鮮 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 2006.
- 鄭鎬伯, 「朝鮮後期 手工業 發展에 關한 一研究」, 高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문, 1981.
- 주경미, 「한국 대장장이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 『역사와 경계』 78, 2011.
- 최문환, 「조선시대 기와 유통 연구-가마의 위치와 운송을 중심으로-」 『사학지』 42, 2010.
- 최완기, 「조선조 漢陽에서의 匠布制 실시와 그 의미」 『梨花史學研究』 30, 2003.
- 한정수, 「조선 전기 제지(製紙)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1999.
- 韓鴻烈, 「韓國傳統手工業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호서문화논총』 8, 1994.
- 홍대한, 「고려시대 공장(工匠) 운영과 성격 고찰 : 조탑 공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3, 2012.

Abstract

Changes in the State-led Handicraft Industry and Private Artisans in the Fifteenth Century

Ko Eun-kyung
Histor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led handicraft industry(官營手工業) and its changes in the fifteenth century Joseon(朝鮮) and provided a definition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artisans(私匠).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tate system after Joseon was founded, the state-led handicraft industry was restructured to be under complete control of the state. The state had the full-time artisans registered as governmental artisans(官匠) and mobilized them for various projects for building the system and basis of the state. These governmental artisans took turns to work in shifts(番次制) and were able to produce and sell crafts freely by paying the artisan tax(工匠稅) when they were off shifts. Policies on the state-led handicraft industry in the fifteenth century, however, were not implemented as planned in reality and instead they started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socioeconomic changes of the era. The governmental artisans, in particular, started to focus more on activities for their own profi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city market. Some of them even broke away from the state-led system to become private artisans.

In previous studies, the private artisans were regarded as independent artisans who emerged after the sixteenth century and were

distinguished from governmental artisan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handicrafts would have been procured in the private barter economy before the sixteenth century, the term private artisans could encompass “all artisans who took part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governmental artisans who also took part in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fifteenth century” could also be classified as private artisans. The activities of private artisans could be largely classified as “those who were affiliated with merchants,” “those who ran workplaces with their own capital and produced and sold their handicrafts,” and “those who ran small businesses and farmed as well.”

While the state adapted to the growth of the market by changing the supply method and purchasing necessary products from the chartered-markets(市塵), it was set on maintaining the state-led handicraft industry for manufacturing weapons or for producing high quality products for the royal family. Such changes in the policy were a part of the process of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barter economy despite the centralized economic policy(集權的 經濟政策) and the state’s initiative to restructure policies on the handicraft industry so that they could reflect the reality in which the range of activities conducted by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artisans expanded.

**Keywords : State-led Handicraft Industry, Governmental Artisans,
Private Artisans, Centralized Economic Policy,
Commercial Activities of Governmental Artisans**

Student Number : 2013-23366